발 간 등 록 번 호
36-981E1QG-010541-10

육군박물관 학예총서 제2집

[개정판]

조선군인 및 조선보병대에 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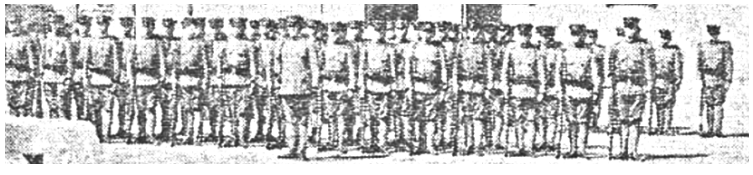

1929년 6월 1일 조사
조선군사령부 부속청사

201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역자 서문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일본명 제3차 한일협약)을 근거로 같은 해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대부분이 해산되었지만, 1910년 8월의 한일강제병합 시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재직중인 조선인 군인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 구 대한제국 군인에게 부여된 신분의 총칭이 바로 '조선군인'이다. 이들 조선군인은 구 대한제국 시대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 육군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조선이 일본령이 된 이후에 일본 육군에 입대한 조선인과는 구별된다.

강제병합과 함께 대한제국 군대인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 동궁무관부(東宮武官府) 및 친위부(親衛府)는 폐지되었고, 친위부 예하의 근위보병대와 근위기병대는 각각 조선보병대, 조선기병대로 개칭되어 조선주둔군사령관 예하에 들어갔으며, 친위부의 직원은 조선군사령부 소속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913년 3월에 조선기병대가 폐지되고 조선보병대는 2개 중대(324명)로 편성된 부대로 축소되었다. 1919년 고종 서거로 덕수궁을 수호할 필요가 없어지자 같은 해 3월에는 조선보병대의 2개 중대 편제를 폐지하고, 부대장이하 228명으로 구성된 부대로 축소하였으며, 1929년 4월에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6명을 줄여 1929년 6월 현재의 202명에 이르고 있다.

1920년의 칙령 제118호(조선군인의 일본 육군 장교 및 장교상당관(相當官) 임용 등에 관한 건)의 제정으로 조선군인 중 장교 및 장교상당관이 일본 육군 장교 및 장교상당관에 자동적으로 임명되어, 조선군인에는 준사관 이하의 하사 및 병졸만이 남게 되었다.

금번 번역에 착수한 '조선군인 및 조선보병대에 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소재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이러한 조선

군대의 모습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본문 및 부표(附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본 자료에는 한일강제병합 전후의 조선군대 편제 변화 및 축소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급여 및 연금, 연명부 등 1929년 당시 조선군인의 처우나 생활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역자 방준영

목 차

1. 조선군대 **9**

1.1. 연혁 9

1.2. 장교 16

1.3. 하사 및 병졸(下士卒) 20

1.4. 장교의 승용마 22

2. 병기 및 탄약 **22**

3. 경리 **24**

3.1. 예산 24

3.2. 급여 24

4. 위생 **26**

4.1. 인원 위생 26

4.2. 말의 위생 27

5. 근무 ····· **27**

6. 교육 ····· **28**

6.1. 장교 교육 ····· 28

6.2. 하사 이하 일반교육 ····· 29

7. 보충 ····· **31**

8. 잡건(雜件) ····· **32**

8.1. 병영 ····· 32

8.2. 내무 ····· 32

8.3. 제 조규(條規) ····· 33

8.4. 연금(恩給) 및 부조료(扶助料) ····· 36

8.5. 감독 및 지도 ····· 38

<부표> ····· **39**

- 1. 조선보병대 편제표 ····· 39
- 2. 조선인 장교 출신별 인원수 ····· 40
- 3. 조선출신 장교 인원표 ····· 41
- 4. 조선출신 장교 및 장교상당관 직원표 ····· 42
- 5. 조선군인 관등 상당표 ····· 43
- 6. 조선보병대 하사 및 병졸 연령별 인원표 ····· 44
- 7. 조선보병대 하사 및 병졸 입대 전 직업별 인원표 ···· 45
- 8. 조선보병대 하사 및 병졸 기·미혼자 비교 인원표 ···· 46
- 9. 조선군인(준사관 이하) 급여 일람표 ····· 47
- 10. 대한제국연금 및 복역연금의 지급금액 및 인원표 ···· 48

1. 조선군대

조선에 조선군인으로 편성된 군대는 조선보병대로 불리는 하나의 부대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선보병대는 조선군사령관의 예하에 속하며, 준사관 이하는 용병제도로 하고, 이들의 임무는 창덕궁의 수위(守衛) 및 의장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 편제는 〈부표1〉과 같다.

1.1. 연혁

구 대한제국은 해군을 보유하지 않고 용병제도의 육군만으로 편성되어 전 · 평시의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예비역(豫備役 : 현역을 마친 군인이 그 후 일정기간 복무하는 상비 병역으로 필요에 따라 소집)및 후비역(後備役 : 본래, 예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는 병역)을 보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는 항시 다수의 결손과 많은 도망자가 속출하였고, 군기가 문란하며 내부는 혼란스러워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오합지졸이었다. 단지 군복을 착용하고 있는 보통 사람이 병영 내에 기거하고 있는듯한 형편이었으며, 게다가 관아학교(官衙學

校)는 그 명칭 및 편제 등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정연한 모습이면서도 그 내용은 외관과 달리 매우 빈약하였다.

이하, 대한제국시대부터 현재(1929년 6월)에 이르기까지의 군대 및 관아학교의 연혁을 개설한다.

1905년 1월 당시의 부대는 아래와 같다.

구분	명칭	소재지
원수부(元帥府)		경성(京城)
참모부(參謀部)		
교육부(教育部)	· 무관학교(武官學校) · 연성학교(硏成學校) · 유년학교(幼年學校)	경성(京城)
군부(軍部)	· 육군법원(陸軍法院) · 위생원(衛生院) · 군기창(軍器廠) · 시위연대(侍衛聯隊): 제1 · 2 · 3대대 · 친위연대(親衛聯隊): 제1 · 2 · 3대대 · 기병대(騎兵隊) · 포병대(砲兵隊) · 공병대(工兵隊) · 헌병사령부(憲兵司令部): 경성헌병대(京城憲兵隊) · 치중마대(輜重馬隊)	경성(京城)

	· 군악대(軍樂隊) · 진위 제4연대(鎭衛 第四聯隊): 第一 · 二 · 三大隊	
	· 진위 제1연대(鎭衛 第一聯隊)	강화(江華)
	· 진위 제2연대(鎭衛 第二聯隊)	수원(水原)
	· 진위 제3연대(鎭衛 第三聯隊)	대구(大邱)
	· 진위 제5연대(鎭衛 第五聯隊)	북청(北靑)
	· 진위 제6연대(鎭衛 第六聯隊)	의주(義州)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		경성(京城)
동궁배종무관부(東宮陪從武官府)		
친왕부 무관(親王附武官)		

1905년 2월, 참모부 및 교육부를 폐지하고 해당 사무를 군부에 병합시켰다.

같은 해 4월에는 시위연대 및 친위연대를 폐지하여 시위 제1연대를 편성하였고, 기병대 · 포병대 · 공병대는 모두 중대편성으로 하는 한편, 진위연대(鎭衛聯隊)를 대대편성으로 하여 수원, 청주(淸州), 대구, 원주(原州), 황주(黃州), 평양(平壤)에 각각 1개 대대를 두었다(北靑에는 당분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함). 또한 징상대(徵上隊)라 칭하는 보병 3개 대대를 편성하여 경성에 두었고 홍릉수호대(洪陵守護

隊 : 고 민비의 묘소 수위) 1개 부대를 설치했다.

1906년 10월에 위수사령부(衛戍司令部)를 경성에 설치하였고, 이 듬해 4월에는 시위혼성여단(侍衛混成旅団)을 편성하여 同사령부를 설치하고 진위 제8대대를 편성했다.

시위혼성여단은 종래의 시위연대를 시위보병 제1연대로 개칭하고, 징상대대를 연대편성으로 하여 이를 시위보병 제2연대로 칭하였다. 또한 기병 · 포병 · 공병대를 시위 기병 · 포병 · 공병대로 개칭하여, 시위혼성여단에 예속시켰다.

1907년 당시의 부대는 아래와 같다.

구분	명칭	소재지
원수부(元帥府)		경성
군부(軍部)	· 육군법원(陸軍法院) · 연성학교(研成學校) · 무관학교(武官學校) · 유년학교(幼年學校) · 위생원(衛生院) · 군기창(軍器廠) · 헌병사령부(憲兵司令部): 경성헌병대(京城憲兵隊) · 경성위수사령부(京城衛戍司令部) · 시위연대(侍衛聯隊): 제1 · 2 · 3대대	경성

	· 친위연대(親衛聯隊): 제1 · 2 · 3대대 · 기병대(騎兵隊) · 포병대(砲兵隊) · 공병대(工兵隊) · 시위혼성여단사령부(侍衛混成旅団司令部) -시위보병 제1연대: 제1 · 2 · 3대대 -시위보병 제2연대: 제1 · 2 · 3대대 -시위기병대(侍衛騎兵隊) -시위포병대(侍衛砲兵隊) -시위공병대(侍衛工兵隊) · 군악대(軍樂隊) · 치중대(輜重隊) · 홍릉수호대(洪陵守護隊)	
	· 진위보병 제1대대(鎭衛步兵 第一大隊)	수원
	· 진위보병 제2대대	청주
	· 진위보병 제3대대	대구
	· 진위보병 제4대대	전주(全州)
	· 진위보병 제5대대	원주
	· 진위보병 제6대대	해주(海州)
	· 진위보병 제7대대	평양
	· 진위보병 제8대대	북청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		경성
동궁배종무관부(東宮陪從武官府)		
친왕부 무관(親王附武官)		

1907년 8월, 황성(皇城)수호를 직접 담당하는 군대관아 및 사관의 양성기관인 무관학교를 제외한 모든 부대를 해산시켰다. 병기(兵器) 사무 및 군사사법(軍事司法)에 관한 사무는 한국주둔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으며, 군사경찰(軍事警察)에 관한 사무는 한국주둔헌병대장에게 위임했다. 그 해산부대는 다음과 같다.

원수부, 헌병사령부, 경성헌병대, 육군법원, 육군감옥, 연성학교, 유년학교, 경성위수사령부, 혼성여단, 진위 보병대대, 치중대, 홍릉수호대, 군기창, 위생원, 군악대(궁내부로 이속)

한편 해산되지 않고 남게 된 부대는 다음과 같다.

군부: 근위보병대(근위보병 제2대대의 개칭), 무관학교
시종무관부
배종무관부(동궁배종무관부의 개칭)
친왕부 무관

1907년 12월에 황실의 의장(儀仗)임무를 위해 근위기병대가 편

성되었고, 1908년 3월에는 배종무관부를 동궁무관부로 개칭했다.

또한 1909년 8월에 군부, 친왕부 무관 및 무관학교를 폐지하여 친위부(親衛府)를 설치했다. 이때 친왕부 무관은 친위부 소속 장교로 배속되었고 무관의 양성은 일본정부에게 위탁했다. 친위부는 궁내부에 예속되어 근위보병 · 기병대를 통독(統督)하게 되었다.

친위부는 군부가 변하여 축소된 것으로 당시의 부대 및 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친위부 : 근위보병대, 근위기병대
시종무관부
동궁무관부

(1) 한일강제병합시의 부대

1910년 8월의 강제병합 결과 시종무관부, 동궁무관부 및 친위부는 자연히 폐지되었고, 근위보병대는 조선보병대로, 근위기병대는 조선기병대로 개칭되어 조선주둔군사령관 예하에 들어갔으며, 친위부의 직원은 조선군사령부 소속으로 임명되었다.

(2) 강제병합 후의 축소

1913년 3월에 조선기병대가 폐지되고 조선보병대는 2개 중대로 편성된 부대(역자 주: 324명)로 축소되었다.

고종의 서거로 덕수궁을 수호할 필요가 없어지자 1919년 3월에는 조선보병대의 2개 중대 편제를 폐지하고, 부대장이하 228명으로 구성된 부대로 축소하였으며, 1929년 4월에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6명을 줄여 현재의 202명에 이르고 있다(부표1 참조).

1.2. 장교

(1) 장교의 신분

조선인 장교는 모두 대한제국시대의 임관자로서, 옛 관명을 답습하여 호칭하고 대한제국 육군장교지위령을 적용해 오다가, 1920년의'칙령 제118호'(조선군인의 육군 장교 및 장교상당관으로의 임용 등에 관한 건)에 의거, 현재는 일본 육군 장교와 동일시되고 있다.

조선군인이면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정규교육을 받은 장교는, 대한제국시대의 임관자와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바, 이들의

신분 등은 일본인 장교와 동일하며, 현재 그 인원은 현역이 14명, 예비역이 21명이다.

(2) 장교의 현직

조선인 장교로 현직에 있는 자는 조선군사령부 소속(公附 무관을 포함) 및 조선헌병대사령부 소속의 조선보병대 부속으로 한다.

(3) 장교의 출신 및 소양

대한제국시대의 장교 중 그 일부는 일본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하여 그 성적이 다소 볼만한 자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매우 불완전하고 정비되지 않은 무관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무과 급제자로 불리거나 궁술 시험을 받은 자, 또는 문관에서 전향하거나 세력가와의 인연으로 입신한 자, 혹은 궁성수호 시 직접 황제의 눈에 띄어 병졸에서 일약 장교로 임용된 자도 있었다. 이들 중, 문관에서 전향하여 임용된 자들은 다소 한문 소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이외의 자들은 군사학은 물론 한문 소양은커녕 눈뜬장님이나 다를 바 없는 자도 있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부대 축소와

개편 및 폐지를 통해 무능한 자가 도태되었고 비교적 양호한 자를 선발되어 잔류하였다. 한일강제병합 후 특히 일본 육군 장교로 임용된 후에는 교육지도에 크게 노력한 결과 면목을 일신하였고, 그 중 우수한 자는 일본의 장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부표2 참조).

(4) 장교의 지위

대한제국시대인 1904년 9월에 조서(詔書)의 형태로 일본 제국제도를 모방한 '육해군 장교 지위령'이 공포되었으나 완전히 사문화되어 당시 거의 유민(遊民)이나 다름없는 현역장교가 있었으며, 1909년 7월 이전까지는 예비역이나 후비역도 없었기에 도리어 지위령과는 무관하게 무보직으로 불린 자(무관학교 졸업 후 계급만을 부여받아 장차 군대확장시를 고려하여 봉급도 지급받지 못하고 따라서 직무도 없는 자, 그리고 문관이면서 무관을 통수하는 관계상 일시적으로 무관의 관직을 부여받은 자) 혹은 견습으로 불리면서 결원 보충을 위해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부대에 속하여 근무하는 자도 있었다.

1909년 8월, 군부를 폐지하고 친위부를 설치한 결과 정원이 감

소하였고 37명의 정원을 초과하는 장교가 발생하였다. 이를 정리할 방법으로 해당 인원들을 예비역으로 편입하여 연금(恩給)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예비역 및 후비역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20년부터는 일본 육군 장교로 임용된 자들에게 일본인 장교와 동일한 지위령을 적용하게 되었다.

(5) 장교 인원

1906년 현재 1,385명(약 666명의 무보직 및 약 169명의 견습 포함)의 장교에 대해서는, 1907년 8월의 대한제국 군대해산 시 112명을 제외하고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하사금(恩賜金)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면관시켰다. 1909년 8월의 군부 폐지 시, 또다시 60명의 현역 장교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예비역 및 휴직에 편입되었다. 1910년 강제병합 시 60명이었던 장교 수는 이후 전역, 사망 등으로 감소하여, 현재(1929년 6월 1일)는 현역 16명, 예비역 35명이며, 그 출신 및 성명은 〈부표2, 3, 4〉와 같다.

1.3. 하사 및 병졸(下士卒)

(1) 하사 및 병졸의 신분

조선군인(준사관 이하)는 용병으로 조선군사령관이 정하는 조선군인 선서방식에 따라 선서식을 행하고 2년 이상의 복무를 서약하며 이후 희망에 따라 복무하고 있는 자들로, 제대 시에는 자연히 그 등급이 소멸된다. 그리고 복무하는 동안은 일본 육군 군인과 동일한 제복(좌우측 옷깃에 금속제 금색 기장을 부착)을 착용하고 각 계급에 상당하는 일본 육군의 다음 서열에 위치하며, 별도로 정한 급료를 지급받고, 하사 이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부표5, 9를 참조).

복역은 일본 육군군인 복역령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복역령에 따라 준사관 및 하사는 40세, 병졸은 35세까지 복역할 수 있다. 단 진급에 관해서는 일본 육군 진급규정을 준용한다.

(2) 준사관 이하의 인원

조선보병대의 준사관 이하의 정원은 195명으로 하며, 결원은 매년 1회 일반 조선인들로부터 모집하고 있다.

(3) 하사 이하의 소질

대한제국 시대의 하사 및 병졸은 용병제도였으며, 더욱이 최하위층의 인민을 집합시켜 놓은 것이었기에 거의 노예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병졸은 스스로가 인정하는 일반 용역자 중 가장 열등한 자로서, 아침에 식사가 곤란하면 들어와서 병졸이 되고, 저녁에 밥을 얻으면 도망가는 등, 병영은 마치 이들 빈민의 기식소(寄食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따라서 병졸은 일말의 의무감도 없고 군기, 풍기는 문란하며 교육 및 내무의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군대축소 시 비교적 우량한 자를 잔류시키고, 또한 한일강제병합 후에는 보결응모자의 소질이 점차 향상되어 불량한 자들은 즉각 제대할 것을 명하는 등 감독을 엄하게 하고 지도한 결과, 지금은 예전의 폐해를 일소하고 크게 모습이 바뀌어 내무 및 교육의 일부에 있어서는 일본 군대와 비교해도 오히려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현재 하사 이하의 학력 정도는 보통학교졸업 이상이며 그 연령, 직업 및 혼인 여부에 관해서는 〈부표 6, 7, 8〉과 같다.

1.4. 장교의 승용마

조선인 장교의 승용마는 대한제국 승용마령에 의해 말을 탈 본분에 있는 장교에게 대여해 왔는데, 1922년 8월에 육군 장교 승용마령이 개정됨에 따라 1923년 7월에는 승용마 정수가 개정되어 장관(將官) 및 공부(公附) 무관, 조선보병대장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현재 승용마 정수는 7마리로 한다.

2. 병기 및 탄약

(1) 조선보병대의 병기는, 일본의 보병연대가 필요로 하는 병기와 동일하며(특종 병기 제외) 조선군사령관의 관리에 속한다. 조선보병대장이 보관하고 있는 탄약은, 필요로 하는 수를 군사령부에 청구하여 조선부대비로 구입한 후, 제20사단 병기부 창고에 보관을 위탁하고 필요에 따라 청구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탄약의 취급에 관해서는 조선군사령부가 규정하는 조선보병대 병기취

급 세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 병기를 신조(新調) · 수리(修理)할 경우, 조선병기제조소에 주문하여 배당된 예산 내에서 지변(支辨)처리하고 있다.

(3) 매년 지급해야 할 탄약은 실탄을 사관 이하 각 개인에게 20발씩, 공포탄은 병졸에게만 각 4발씩 지급하며, 부대 지급탄으로 실탄 750발을 지급한다.

(4) 종래 대한제국 시대에는 병기에 대한 존중심과 같은 마음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서 병기를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었기에 그 명중도 또한 대단히 불충분하였지만, 점차 향상되어 현재는 그 면목을 일신하였다.

3. 경리

3.1. 예산

조선부대비는 조선총독부 예산에 속해있으며, 조선군 경리부장의 감독 하에 경리부에 배치된 출납관리가 출납을 실행하고 있다. 금년도 예산은 248,956엔으로 조선보병대 군사령부 부속청사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조선 예·후비역 군인의 대한제국연금 및 복역연금에 지불되고 있다.

3.2. 급여

(1) 봉급 및 급여

장교의 급여는 일본 장교와 완전히 동일하다.

준사관 이하의 봉급 급여는 〈부표9〉와 같다.

(2) 양식(糧食)

양식은 위임경리로서 주식 정량(主食定量)의 정미(精米) 855그램

과 도료정액금(賭料定額金) 18전으로, 일본 군대와 비교해서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채소 절임, 간장, 된장 등을 자영에 의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기병 예방과 습관, 기호 등도 고려하여 주식 정량의 일부를 줄여 대용으로 보리를 혼용하고, 그 차액으로 부식물의 급양을 행하고 있다. 조선인으로서는 중류 이상의 가정생활과 비교해도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3) 피복

하사 이하가 소지하는 피복의 정수(定數) 및 급여 기한은 대략 육군 급여령에 준거하고 있다.

피복의 신조(新調)는 배당 예산 내에서 피복창에 청구하여 시가에 따라 교부를 받으며, 이에 대한 교환 지급(換給)은 훼손의 정도에 따라 갱신하고 있다.

재고 피복은 정원 대비 약 1.5배를 기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그 손질 및 보존은 대체로 적당히 실시되고 있다.

(4) 진영구(陣營具) 및 소모품

진영구는 재래품을 이리저리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定數) 및 제식(制式)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부대 비치품의 수를 정해서 특수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점차 일본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갱신되고 있다.

소모품 및 피복의 보수 재료에 관해서는, 수용(需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상을 조사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

4. 위생

4.1. 인원 위생

대원들의 보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도 해마다 향상, 진보되고 있다.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군의가 진료를 실시하되, 중환자는 용산위수병원(龍山衛戍病院)에 위탁 입원시키고 있

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비는 총독부예산 조선부대비로 지변(支辨)하고 있다.

최근 조사한 부대원의 신장 평균치는 165.1미터이며, 체중 평균치는 59.84킬로그램이다.

4.2. 말의 위생

가벼운 증상의 말은 부속청사에 근무하는 수의가, 중한 증상의 말에 대해서는 군 수의부에 위탁해서 진료를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경비는 조선부대비로 지변된다.

말발굽의 편자는 현품을 헌병대사령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말의 영양과 체격은 모두 대체로 양호하다.

5. 근무

(1) 군사령부 소속 장교 중 공부(公附) 무관 외에는 부속청사에

서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 부속청사는 정원에서 초과된 장교를 수용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일정한 직무가 없는 이러한 위관장교를 위수 위병 순찰에 복무토록 하는 것 외에, 한글(諺文)신문 및 잡지의 번역이나 조선 내의 제반 정보수집 등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

(2) 조선보병대 소속의 장교 이하는 창덕궁 위병 및 순찰, 그리고 풍기(風紀) 위병주번(衛兵週番) 등의 근무에 임하고 있다.

6. 교육

6.1. 장교 교육

장교 교육은 부속청사 근무자 및 조선보병대에 소속된 자들을 하나로 모아, 감독 장교의 통제 하에 연 1~2회 정도 수일간 숙박하며 현지전술 및 추계훈련, 부대업무 견학 또는 때때로 도상(현지)

전술 강화(講話) 등을 실시함으로써 오로지 장교의 능력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어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성적은 모두 중하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

그밖에 특종(特種)훈련이 있을 때에는 되도록 견학시키고 있다.

6.2. 하사 이하 일반교육

1916년 6월에 이구치 쇼고(井口省吾) 조선주둔군사령관으로부터 감독 장교에게 하달된 훈시에 의거하여, 왕궁(王宮)을 수호(守護)하는 의장대로서의 임무 달성에 주안을 두고 상식의 양성과 일본어 숙련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요 과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각개교련
2. 중대교련(주로 밀집교련)
3. 기본 사격
4. 체조 검술 및 유기(遊技)
5. 위병근무
6. 학과

술과(術科)에서는 체구를 단련하며, 특히 군인의 위용과 자세, 경례 등에 관해 교육한다. 학과(學科)에서는 주로 정신교육을 통해, 일본 국체의 존엄성과 황실에 신속(臣屬)된다는 점, 한일강제병합의 이유 및 군기 풍기의 긴숙(緊肅)은 건군의 요소라는 점을 교육한다. 그 외에도 군인에게 필수적인 과목 및 일본어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호령(號令), 시문응답(試問應答)시에는 물론, 일상생활의 상호대화 간에도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숙달을 장려하고 있다. 하사 및 상등병에 대한 특별 교육은 지명된 장교 및 조교(군사령부 소속 하사)가 이를 분담해서,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도로 전범령(典範令), 제 규칙서의 적강(摘講), 일본어 및 보통학(普通學)을 예정 계획에 따라 교육하고 있다.

일반교육은 하나의 교육연도를 2기로 나누고, 신병 교육기간을 3개월로 하며 다음 3개월간은 중대교련 및 기타사항을 교육하고, 이후 고참병(古兵)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

특업교육(特業教育, 즉 총공(銃工), 봉공(縫工), 혁공(靴工), 나팔)은 용산에 위치한 일본 부대에 위탁하게 되는데, 매년 이 부대의 교육기간을 거친 후에 각 특업에 복무하게 된다. 간호학 교육은 용산위수병

원에 위탁하여 약 5개월간 실시하고 있다.

7. 보충

(1) 장교

대한제국 시대의 임관자들은 일정한 정원이 없었으며, 한일강제병합 당시 조선보병대 소속 이외의 자들은 군사령부(公附 무관 포함) 및 조선헌병대사령부 소속이 되었다. 현재의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충의 필요성도 없으며 보충 기관도 없다.

(2) 조선군인

준사관은 하사에서, 하사는 상등병에서 보충하고 있다. 병졸은 결원에 대해 대략 매년 3월에 보통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일반 조선인 중에서 모집 보충해오고 있는데, 매번 그 응모자가 수배에 달해 항시 우수한 자들을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다.

8. 잡건(雜件)

8.1. 병영

병영은 대한제국 시대의 것으로 경성 광화문길 77번지(총독부 앞)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약 6천 평이고 주위에 병사(兵舍)로 건축된 십 수동의 건물이 있으며, 사무실, 취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병사는 4개 중대 편성 당시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인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식 가옥이기에 내부가 협소하고 불편한 감이 없지 않으며, 일본 군대의 훈련막사(演習廠舍)와 거의 흡사한 느낌이다. 따라서 내무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일본 군대처럼 실행할 수 없는 점도 있다. 1928년에 부지의 일부를 총독부에 제공하였는데 그 보상으로 지금의 병사 창고의 모양전환공사(模樣換工事)가 실시되어 6월 하순에 준공되었다.

8.2. 내무

내무는 군대내무서에 준해서 그 실행에 힘쓰고 있으나, 실내장

치가 병영의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용병제도 하에서는 입대 및 제대의 취급을 군대내무서에 전혀 의거할 수 없고, 제 장부의 제식 및 하사 이하의 외출 등에 관해서도 생활사정(民情)이나 습관을 (일본과)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다.

8.3. 제 조규(條規)

조선군대에 적용되는 제 조규는 그 원안을 일본의 것에서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성질을 달리하고 있고, 풍속이나 습관, 병사(兵舍) 구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운용상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칙령 혹은 군사령관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혹은 대한제국 시대에 제정된 것이나 습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기에, 현재는 증보 및 개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는 조규를 개략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칙령 혹은 그 밖의 형태로 공포된 것

조선군대 예속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軍令陸乙 제10호)

대한제국 군인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23호)

조선군인에 관한 건(1911년 3월 30일 칙령 제36호)

조선군인 봉급 등급 및 급여 규정(1920년 4월 27일 陸達 제28호)

조선군인의 육군 장교 및 장교상당관 임용 등에 관한 건(1920년 4월 26일 칙령 제118호)

조선군인에서 장교 및 장교상당관에 임용되는 자의 봉급등급 및 급여 규정(1920년 4월 27일 陸達 제29호)

조선보병대 편제표(1929년 3월 29일 軍令陸乙 제11호)

왕공부(王公附)무관 정원에 관한 건(1910년 12월 陸普 제4995호)

조선군사령부 및 조선헌병대사령부에 정원 외로 사람과 말을 증가 배속시키는 건(1920년 4월 27일 軍令陸乙 제5호)

1920년 칙령 제118호에 의거 임관 장교의 승용마에 관한 건(1923년 7월 21일 送達陸密 제179호)

조선군인 및 조선군인 유족 부조령(1926년 3월 30일 칙령 제27호)

1909년 칙령 제68호에 의한 구 한국무관 연금 증액에 관한 건(1926년 3월 30일 칙령 제28호)

(2) 군사령관에 의해 규정된 것

조선군인 선서식 방법의 건(1914년 8월 8일 朝人甲 제174호)

조선부대 병기 취급 세칙(1916년 4월 朝兵 제28호)

조선군인에서 일본 육군 장교 및 장교상당관으로 임용된 자의 서위에 관한 건(1922년 5월 10일 朝人乙 제288호)

조선군인에게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의 처분에 관한 건(1913년 10월 13일 法發 제368호)

하사 이하의 급료 지급일 건(1911년 9월 8일 給 제193호)

(3) 육군의 제 조규를 적용한 것

육군 예식

육군 형법(형의 선고와 함께 제대 수속을 행함)

육군 징벌령(처벌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은 한국징벌령에 의거하여 중 근신, 중영창의 경우 10분의 3을, 경근신, 경영창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감액)

군대 내무서(외출, 실내장치, 제 장부, 입대 및 제대에 관한 취급을 제외)

조전(操典)

제 교범(사격교범은 일부)

진중 요무령(陣中 要務令)

육군 나팔보(喇叭譜)

서훈 내칙(조선군인에 대해서는 특별전의(特別詮議)에 의한다)

육군 장례령 및 매장 규칙

육군 복장 규칙

위수근무령

육군 병졸 진급 규칙

(4) 대한제국 시대에 공포된 것을 답습하여 사용한 것

육군 장교 승용마령(1907년 11월 9일 칙령 제34호, 1923년 7월 陸密 제179호에 의해 승용마 정수 개정)

무관 연금에 관한 건(1909년 7월 칙령 제68호, 1909년 布達 제9호)

조선군인 현역 정년연령 조규 1904년 9월 27일(한국군인 복역령으로 현재 준사관 이하에 적용)

8.4. 연금(恩給) 및 부조료(扶助料)

조선인 장교 및 준사관 이하의 자가 받는 연금 및 복역연금은 그 직책을 떠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종류가 다르며, 이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제국 무관연금

1907년 대한제국 군대해산 후 1909년 칙령 제68호에 의거, 군부 폐지와 친위부 설치에 따라 당시의 장교들이 정리되어 같은 해 7월의 포달(布達) 제9호에 의해 현역을 떠나게 된 장교를 예비역으로 편입하였고(당시의 인원에 한함), 종신 대한제국 연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졌다. 현 지급인원 및 금액은 〈부표10〉과 같다.

(2) 복역연금

1918년 칙령 제296호에 의거, 조선군인 및 조선군인 유족 부조령이 제정되어 만 11년(1906년 2월 1일 기산)을 복역한 자에게 종신 복역연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졌다. 현 지급인원 및 금액은 〈부표10〉과 같다.

지금도 현직에 있으며, 1920년 칙령 제118호에 의거 일본 육군 장교로 임용된 18명은, 임용 전일(1920년 4월 26일)자로 조선군인을 이탈하게 됨으로써 당시의 계급에 대해 복역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은 자들이다. 당장은 이 권리를 정지시키되, 1920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연급법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1931년 3월까지 퇴직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계급의 일시연금과 앞에서 언급한 복역연금의 은전을 입게 된다. 이 외에도 대한제국 군대해산 후의 장교 정리 시, 휴직처리가 되었다가 1928년 7월의 한국복역령에 의거 예비역으로 편입된 6명이 있는데, 이들은 연한 부족으로 연금 및 복역연금 어느 쪽의 은전도 입을 수 없으나, 1926년 3월의 칙령 제28호에 의거, 대한제국 연금과 같은 금액의 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8.5. 감독 및 지도

조선인 장교 및 조선보병대의 감독 및 지도를 위해 부속청사에 군사령부 소속 장교 1명을 파견하고, 준사관 1명과 고용인 2명(출납관리에 속함)을 부속하여 서무 및 경리사무에 종사시키고 있다. 또한 조선보병대에는 감독장교를 보좌하도록 군사령부 소속 하사 3명을 부속하여 일반 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종사시키고 있다.

부표 1. 조선보병대 편제표

계급	인원	승용마
중 · 소좌(中 · 小佐)	1(隊長)	1
위관	6(副官)	-
특무정교(特務正校)	1	-
정교(正校)	1	-
부교(副校)	11	-
참교(參校)	5	-
상등병(上等兵)	23	-
일 · 이등졸(一 · 二等卒)	148	-
계	196	1
계수(計手)	1	-
일 · 이 · 삼등 군의(一 · 二 · 三等軍醫)	1	-
조호장(調護長)	1	-
조호수(調護手)	3	-
계	6	-
합계	202	1

※ 보병대 부속 위관은 당분간 소좌 또는 특무정교로 충당할 수 있다.

※ 兵卒에는 나팔수 6명이, 一 · 二等卒에는 縫工卒 3명, 靴工卒 3명, 銃工卒 2명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 본 표 외에 마부를 1명 둘 수 있다.

부표 2. 조선인 장교 출신별 인원수
(1929년 6월 1일 현재)

구분		일본 사관학교 출신	무관 학교 출신	무과 출신	하사 출신	기타	계
現役	장관	2	-	-	-	-	2
	사관	2	7	-	-	1	10
	위관	-	4	-	-	-	4
	계	4	11	-	-	1	16
豫備役/後備役	장관	1	-	-	-	-	1
	사관	4	6	1	-	2	13
	위관	-	19	-	1	1	21
	계	5	25	1	1	3	35

※ 본 표의 기타는 위생부원 및 수의부 장교로, 일본유학생 및 조선의학교 졸업 자를 가리킨다.

※ 본 표에는 상당관(相當官)이 포함된다.

부표 3. 조선출신 장교 인원표
(1929년 6월 1일 현재)

관등	현역	예비역	후비역	계
중장	1	-	-	1
소장	1	-	1	2
대좌	1	-	2	3
중좌	6	2	-	8
소좌	4	6	3	13
대위	5	6	4	15
중위	-	2	5	7
소위	-	-	4	4
계	18	16	19	53

※ 본 표에는 상당관이 포함된다.

부표 4. 조선출신 장교 및 장교상당관 직원표
(1929년 6월 1일 현재)

구 분	관등 성명
조선군사령부 소속	조성근(趙性根) 中將 어담(魚潭) 小將 김응선(金應善) 步大佐 김형변(金亨變) 步中佐 (사망) 정현(鄭炫) 步中佐 장연창(張然昌) 砲中佐 유기성(柳冀聖) 步少佐 이혁(李赫) 三等軍醫正 李堈公附武官 강필우(康弼祐) 步中佐
조선보병대	隊長 이제정(李濟楨) 步少佐 副官 이학래(李學來) 步大尉 임병규(林秉圭) 步少佐 이호진(李浩鎭) 步少佐 정은용(鄭殷鎔) 步大尉 차만재(車萬載) 步大尉 김명식(金明植) 三等軍醫正(보병대 재근)
조선헌병대사령부 소속	박두영(朴斗榮) 砲中佐 고영균(高永均) 步大尉

부표 5. 조선군인 관등 상당표

일본 육군 군인	조선군인
陸軍步兵 特務曹長	陸軍步兵 特務正校
陸軍步兵 曹長	陸軍步兵 正校
陸軍步兵 軍曹	陸軍步兵 副校
陸軍步兵 伍長	陸軍步兵 參校
陸軍步兵 上等兵	陸軍步兵 上等兵
陸軍步兵 一等卒	陸軍步兵 一等卒
陸軍步兵 二等卒	陸軍步兵 二等卒
陸軍 一·二·三等計手	陸軍 計手
陸軍 一·二·三等看護長	陸軍 調護長
陸軍 上等看護卒	陸軍 調護手

※ 조선군인은 일본 육군 군인에 상당하는 것으로 함.

부표 6. 조선보병대 하사 및 병졸 연령별 인원표 (1929년 6월 1일 현재)

연령	하사	병졸	계
18세	-	9	9
19세	-	28	28
20세	1	58	59
21세	-	39	39
22세	3	20	23
23세	4	13	17
24세	1	4	5
25세	-	1	1
26세	3	-	3
27세	3	-	3
28세	2	-	2
29세	1	-	1
30세	1	-	1
31세	-	-	-
32세	-	-	-
33세	-	-	-
34세	1	-	1
계	20	172	192

※ 본 표에는 상당관이 포함된다.

부표 7. 조선보병대 하사 및 병졸 입대 전 직업별 인원표
(1929년 6월 1일 현재)

구분	하사	병졸	계
農業	5	83	88
商業	3	13	16
學生	9	46	55
敎員	-	8	8
面書記	-	2	2
雇傭人	3	14	17
公吏	1	1	2
職工	-	3	3
代書業	-	1	1
無職業	-	-	-
계	21	171	192

※ 본 표에는 상당관을 포함함.

부표 8. 조선보병대 하사 및 병졸 기·미혼자 비교 인원표 (1929년 6월 1일 현재)

계급	기혼자	미혼자	계
正校	2	-	2
副校	10	3	13
參校	4	1	5
上等兵	16	8	24
一·二等卒	88	60	148
계	120	72	192

※ 본 표에는 상당관이 포함된다.

부표 9. 조선군인(준사관 이하) 급여 일람표
(1929년 6월 1일 현재)

계급	一等給(엔)	二等給(엔)
特務正校	75,250	70,000
正校 및 同相當官	39,600	35,000
副校 및 同相當官	25,900	21,600
參校	19,500	18,500
上等兵 및 同級兵	16,000	
一等卒	15,000	
二等卒	14,000	

부표 10. 대한제국연금 및 복역연금의 지급금액 및 인원표 (1929년 6월 1일 현재)

계급	대한제국연금		복역연금	
	지급 인원	1인당 연간 지급액(엔)	지급 인원	1인당 연간 지급액(엔)
부장	-	1,387	-	1,734
참장	1	1,195	-	1,494
정령 및 상당관	-	982	2	1,228
부령 및 상당관	2	843	1	1,054
참령 및 상당관	12	694	4	868
정위 및 상당관	6	502	3	628
부위 및 상당관	4	363	6	454
참위 및 상당관	1	299	1	374
특무정교	-	-	6	300
정교 및 상당관	-	-	1	200
부교 및 상당관	-	-	30	179
참교 및 상당관	-	-	1	158
상등병 및 상당	-	-	16	126
일등졸	-	-	11	116
이등졸	-	-	-	105
계	26	-	82	-

※ 대한제국연금 지급인원 중에는, 권리가 소멸된 참위 1명이 포함되어 있음.

※ 본 표 외의 현역장교 및 장교상당관 18명은 현재 지급이 정지되어 있음.

구분	상이연금(엔)					
	갑			을		
	제2항 증세 이상	제3 · 4항 증세	제5 · 6항 증세	제2항 증세 이상	제3 · 4항 증세	제5 · 6항 증세
준사관	840	646	516	646	516	300
하사	662	496	385	496	385	200
병졸	546	355	294	395	294	126

※ 본 표의 증항(症項)은 연금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함.

구분	진휼금(賑恤金) (엔)	장례료 (엔)
준사관	150	75
하사	100	50
병졸	63	32

자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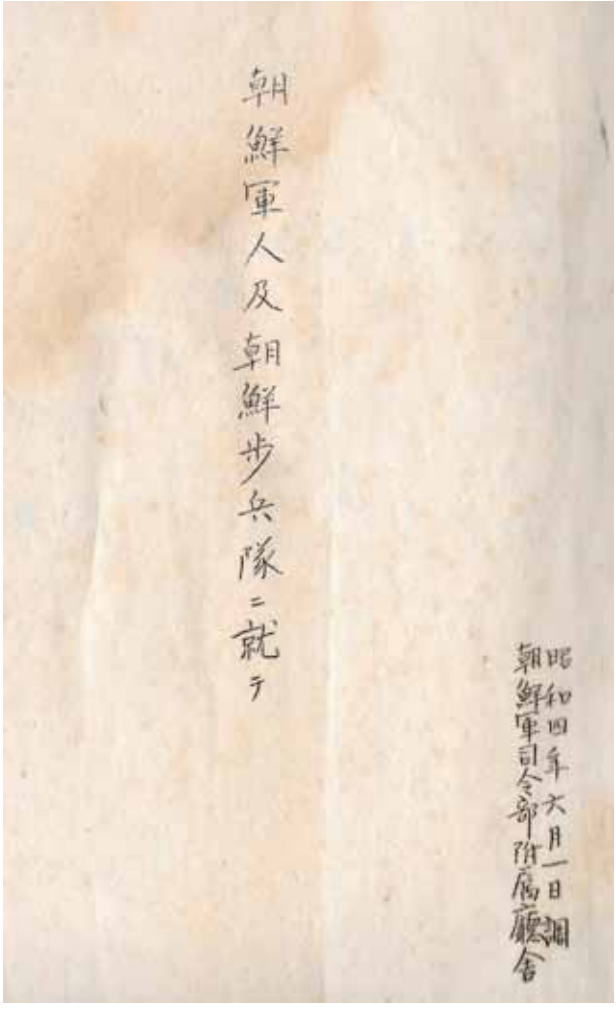
朝鮮軍人及朝鮮歩兵隊ニ就テ

昭和四年六月一日
朝鮮軍司令部附 陸軍歩兵大佐 園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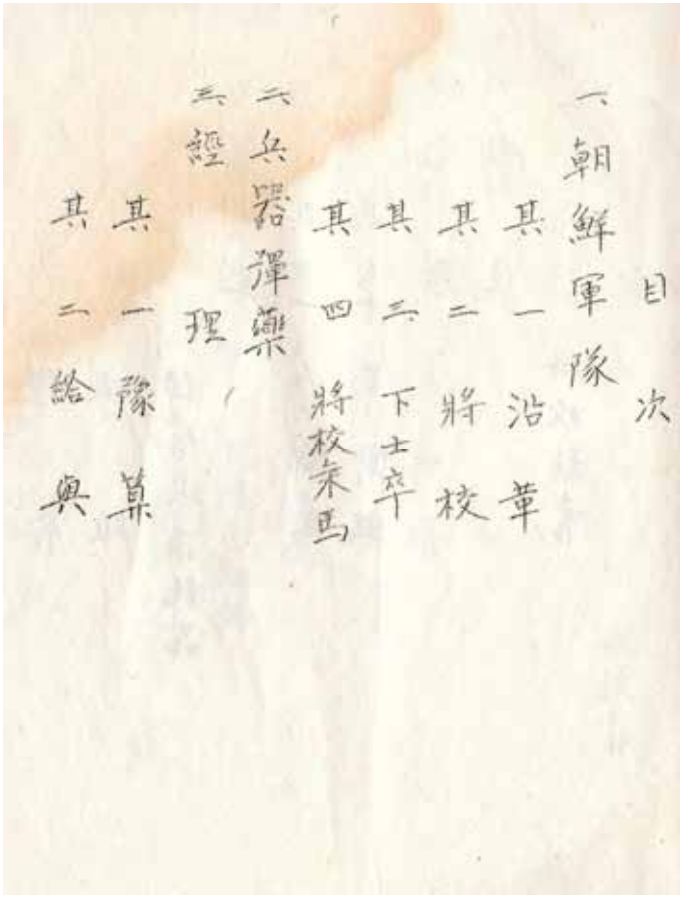

目次

一 朝鮮軍隊
其一 沿革
其二 將校
其三 下士卒
其四 將校乘馬
二 兵器彈藥
三 經理
其一 豫算
其二 給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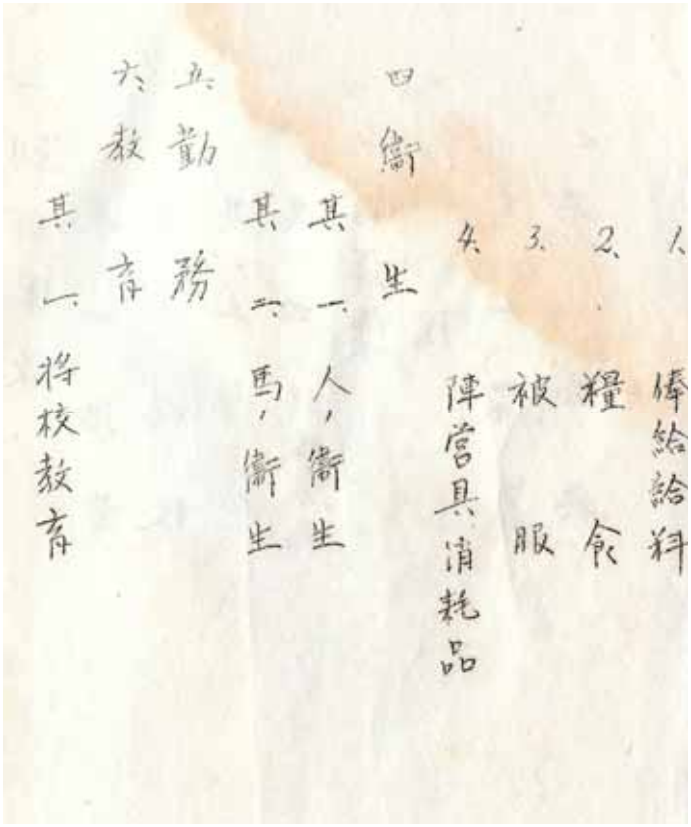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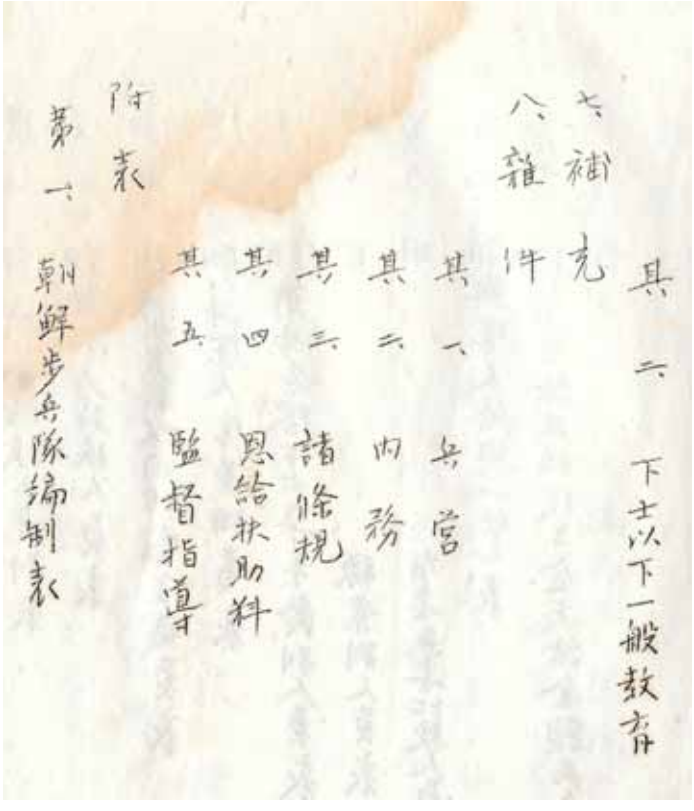

七、褒賞
八、雜件
其一、兵營
其二、內務
其三、諸條規
其四、恩給扶助料
其五、監督指導

其二、下士以下一般教育

附表
第一、朝鮮步兵隊編制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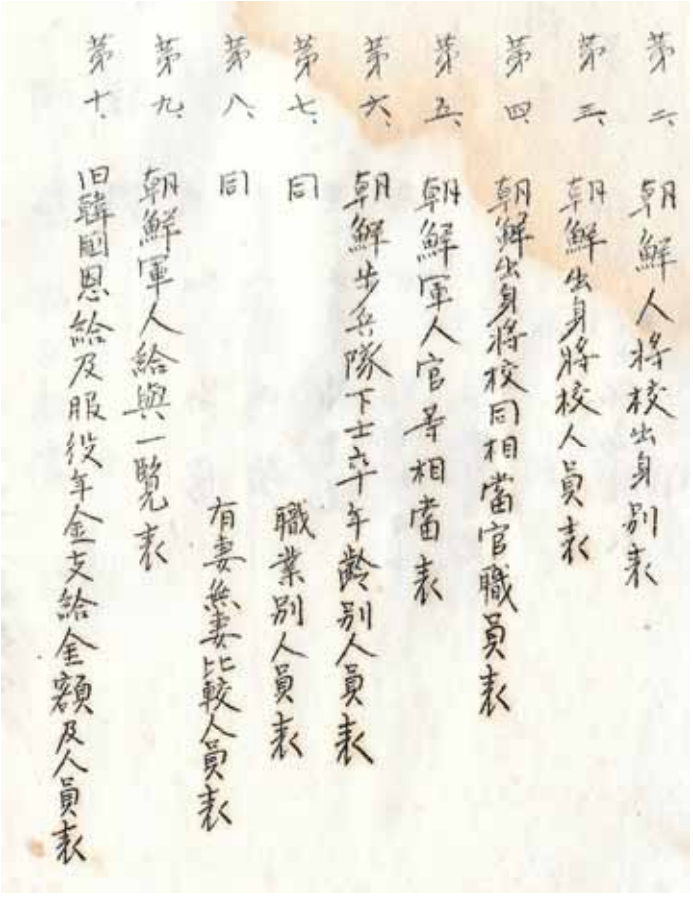
第二、朝鮮人將校出身別表
第三、朝鮮出身將校人員表
第四、朝鮮出身將校同相當官職員表
第五、朝鮮軍人官等相當表
第六、朝鮮步兵隊下士卒年齡別人員表
第七、同　職業別人員表
第八、同　有妻無妻比較人員表
第九、朝鮮軍人給與一覽表
第十、旧韓國恩給及服役年金支給金額及人員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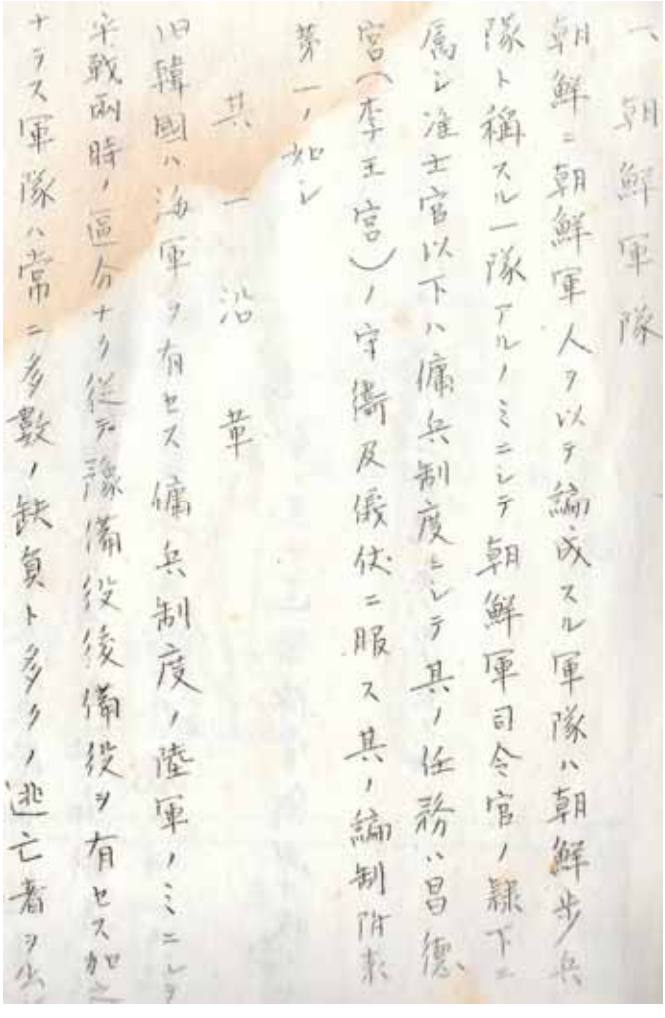

一 朝鮮軍隊

朝鮮ニ朝鮮軍人ヲ以テ編成スル軍隊ハ朝鮮歩兵隊ト稱スル一隊アルノミニシテ朝鮮軍司令官ノ隷下ニ属シ淮士官以下ハ傭兵制度ニシテ其ノ任務ハ昌德宮(李王宮)ノ守衛及儀仗ニ服ス其ノ編制附表第一ノ如シ

其ノ沿革

旧韓國ハ海軍ヲ有セス傭兵制度ノ陸軍ノミニシテ平戰兩時ノ區分ナク從テ豫備役後備役ヲ有セサルナラス軍隊ハ常ニ多數ノ缺員ト多クノ逃亡者ヲ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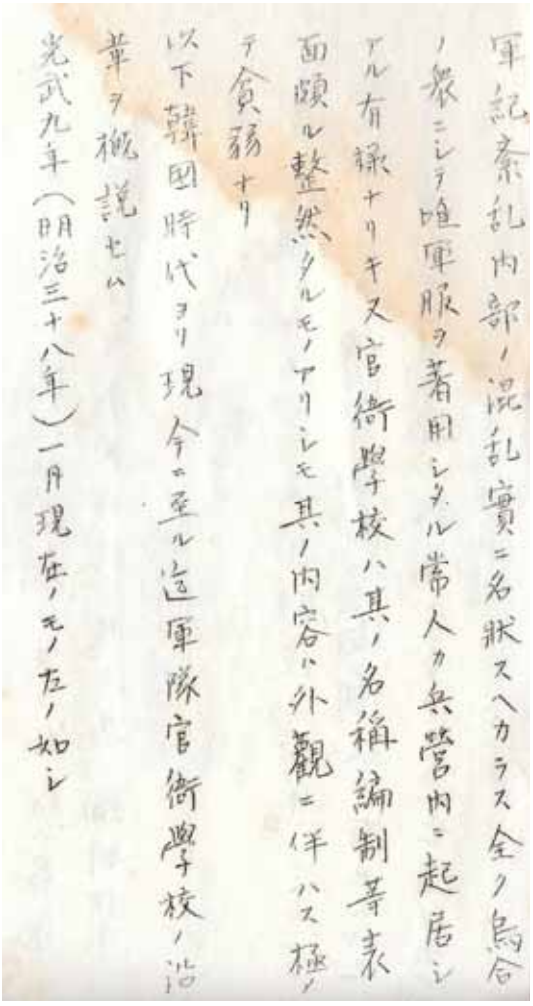

軍紀紊乱内部ノ混乱實ニ名狀スヘカラス全ク烏合
ノ衆ニシテ唯軍服ヲ著用シタル常人カ兵營内ニ起居シ
アル有様ナリキ又官衙學校ハ其ノ名稱編制等表
面頗ル整然タルモノアリシモ其ノ内容ハ外觀ニ伴ハス極ノ
テ貧弱ナリ
以下韓國時代ヨリ現今ニ至ル迄軍隊官衙學校ノ沿
革ヲ概説セン
光武九年（明治三十八年）一月現在ノモノ左ノ如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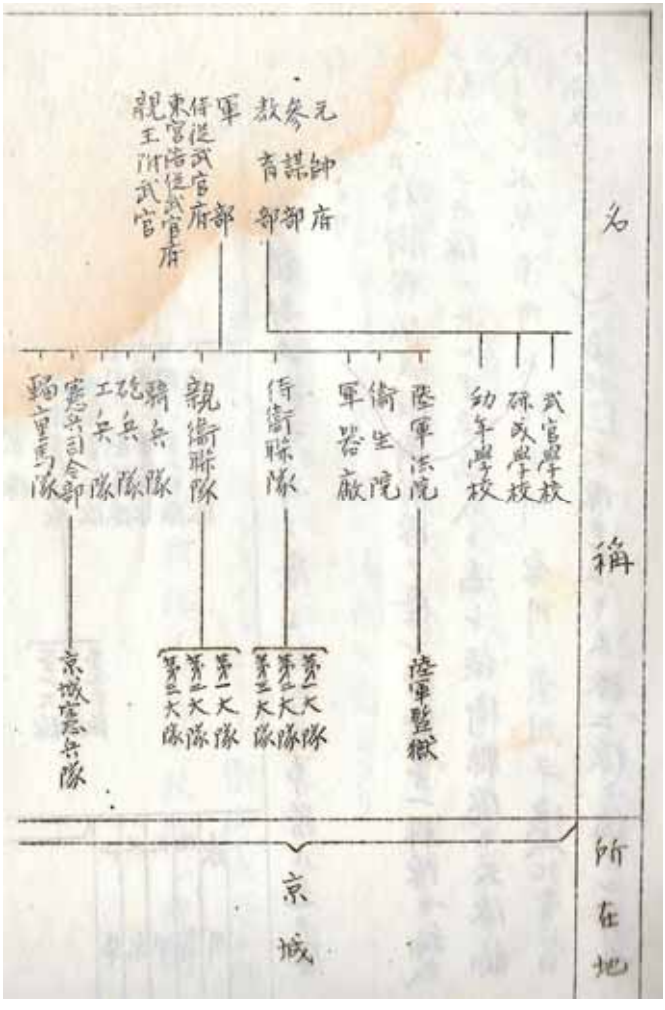
名稱
所在地
元帥府
參謀部
教育部
軍部
侍從武官府
東宮侍從武官府
親王附武官
武官學校
研武學校
幼年學校
軍醫學校
衛生院
軍器廠
侍衛聯隊
親衛聯隊
騎兵隊
砲兵隊
工兵隊
憲兵司令部
騎兵聯隊
第一大隊
第二大隊
第三大隊
陸軍監獄
京城

同年二月參謀部及教育部ヲ廢シ同部ノ事務ハ之ヲ軍部ニ係合セリ

同年四月侍衛聯隊及親衛聯隊ヲ廢シ侍衛第一聯隊ヲ編成シ騎砲工兵隊ハ共ニ中隊編成ト為シ鎮衛聯隊ヲ大隊編成トナシ水原、清州、大邱、光州、原州、黄州、平壌（北青當分編成セサルコトトセリ）ノ各地ニ一大隊ヲ置キ又徴上隊ト稱スル歩兵

軍楽隊
鎮衛第四聯隊
鎮衛第一聯隊
同第二聯隊
同第三聯隊
同第四聯隊
同第五聯隊
第一大隊
第二大隊
第三大隊
江華
水原
大邱
北青
義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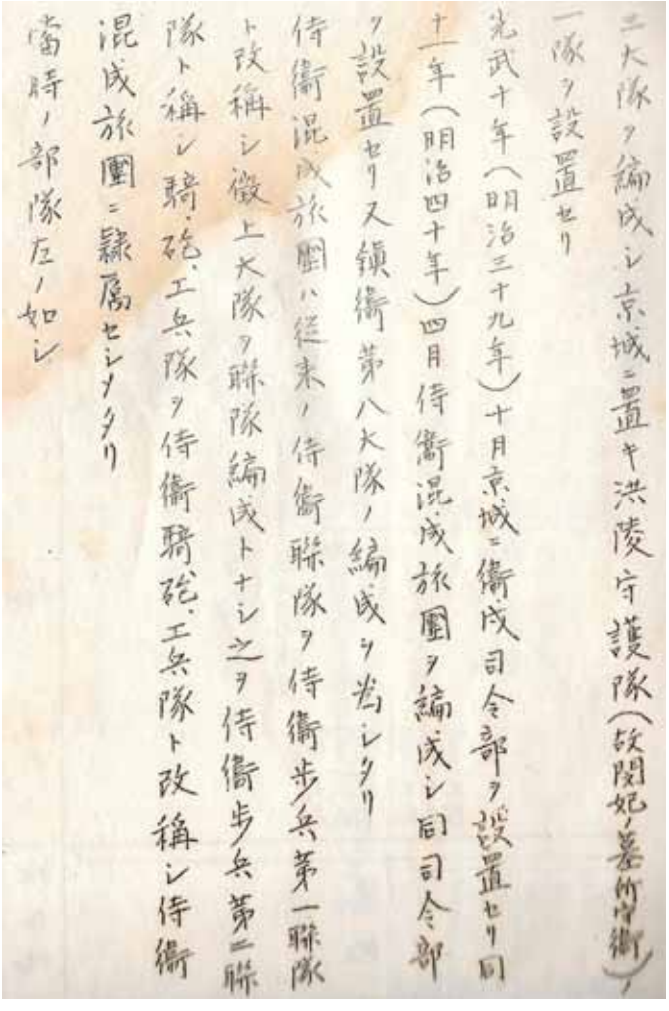

二大隊ノ編成シ京城ニ置キ洪陵守護隊（改閔妃ノ墓竹守衛）
一隊ノ設置セリ
光武十年（明治三十九年）十月京城ニ衛戍司令部ノ設置セリ同
十一年（明治四十年）四月侍衛混成旅團ノ編成シ同司令部
ノ設置セリ又鎮衛第八大隊ノ編成ノ為シタリ
侍衛混成旅團ハ従来ノ侍衛聯隊ノ侍衛歩兵第一聯隊
ト改稱シ徴上大隊ノ聯隊編成トナシ之ノ侍衛歩兵第二聯
隊ト稱シ騎・砲・工兵隊ノ侍衛騎砲・工兵隊ト改稱シ侍衛
混成旅團ニ隷屬セシメタリ
當時ノ部隊左ノ如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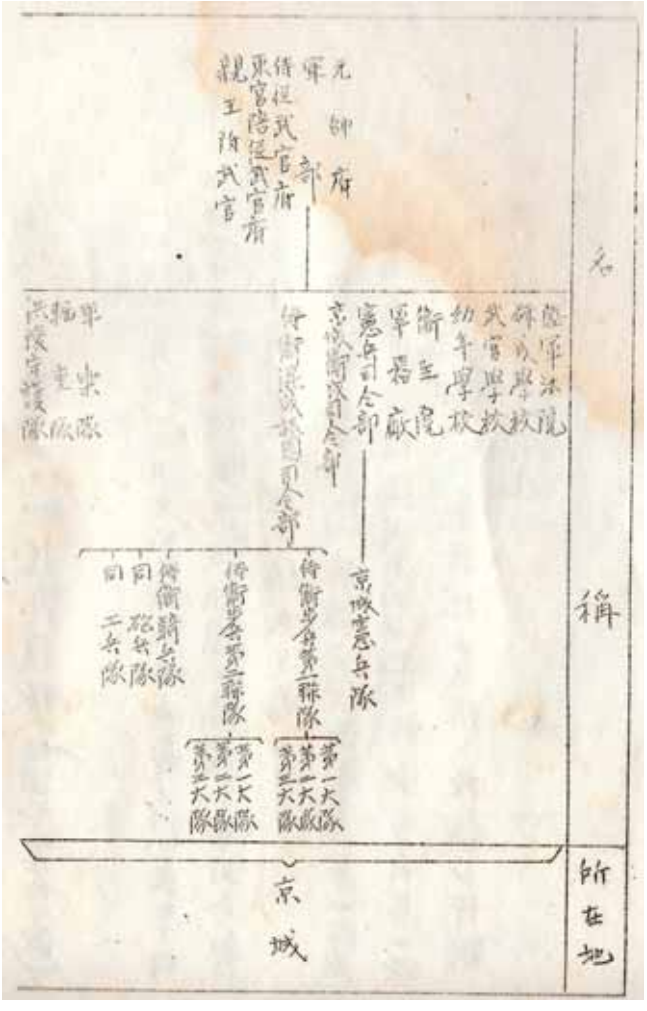
名稱
所在地
京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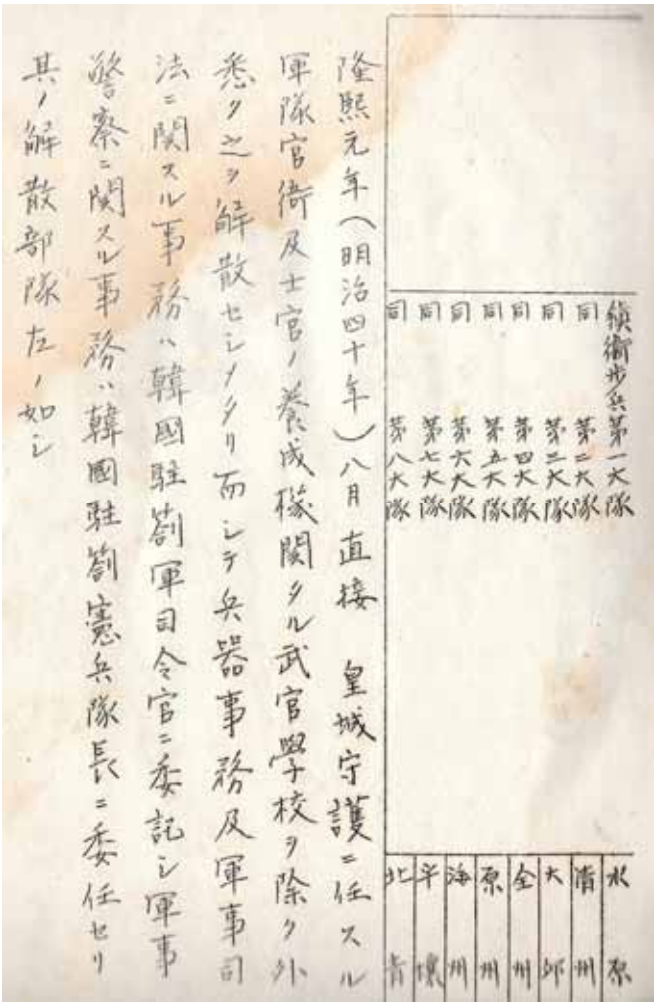

隆熙元年（明治四十年）八月 直接 皇城守護ニ任スル軍隊官衙及士官ノ養成機関タル武官學校ヲ除ク外悉ク之ヲ解散セシメタリ而シテ兵器事務及軍事司法ニ関スル事務ハ韓國駐劄軍司令官ニ委託シ軍事警察ニ関スル事務ハ韓國駐劄憲兵隊長ニ委任セリ其ノ解散部隊左ノ如シ

侍衛歩兵第一大隊	水原	
同 第二大隊	清州	
同 第三大隊	大邱	
同 第四大隊	全州	
同 第五大隊	原州	
同 第六大隊	海州	
同 第七大隊	平壌	
同 第八大隊	北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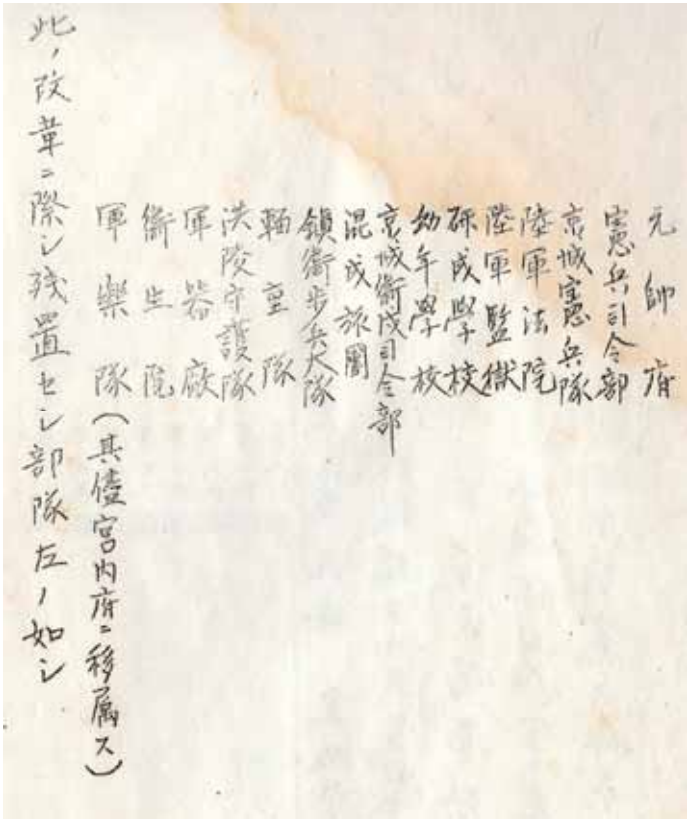
元帥府
憲兵司令部
京城憲兵隊
陸軍法院
陸軍監獄
陸軍幼年學校
京城衛戍司令部
混成旅團
鎮衛歩兵大隊
朝鮮軍
洪陵守護隊
軍器廠
衛生院
軍樂隊（其儘宮内府ニ移屬ス）
此ノ改革ニ際シ殘置セシ部隊左ノ如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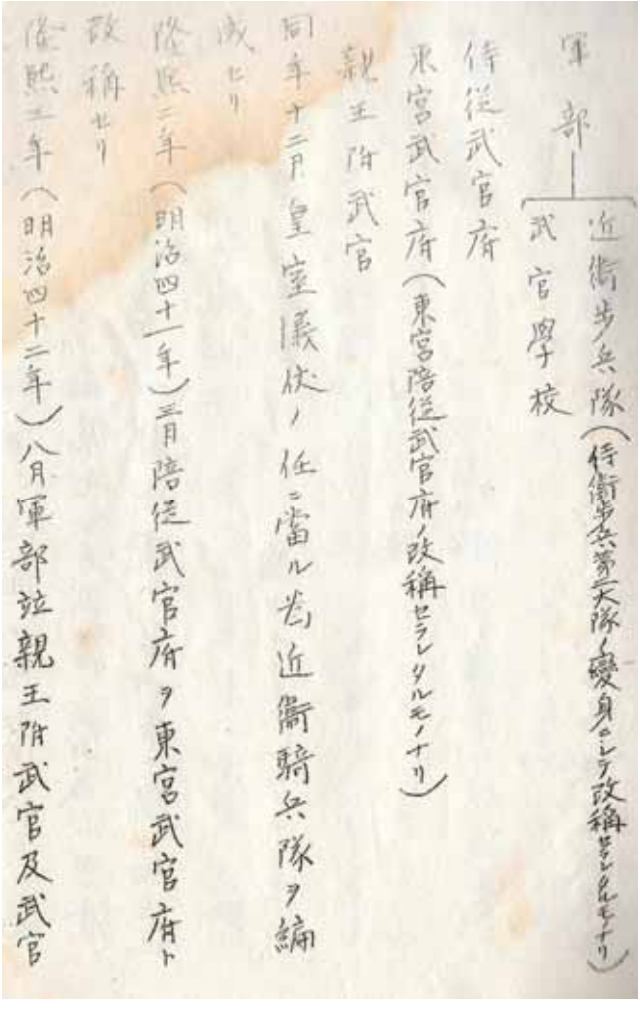

軍部
- 近衛歩兵隊（行衛第一第二大隊ノ變身ニテ改稱セラレタルモノナリ）
- 武官學校

侍從武官府

東宮武官府（東宮陪從武官府ノ改稱セラレタルモノナリ）

親王附武官

同年十二月皇室儀制ノ任ニ當ル爲近衛騎兵隊ヲ編成セリ

隆熙二年（明治四十一年）三月陪從武官府ヲ東宮武官府ト改稱セリ

隆熙三年（明治四十二年）八月軍部竝親王附武官及武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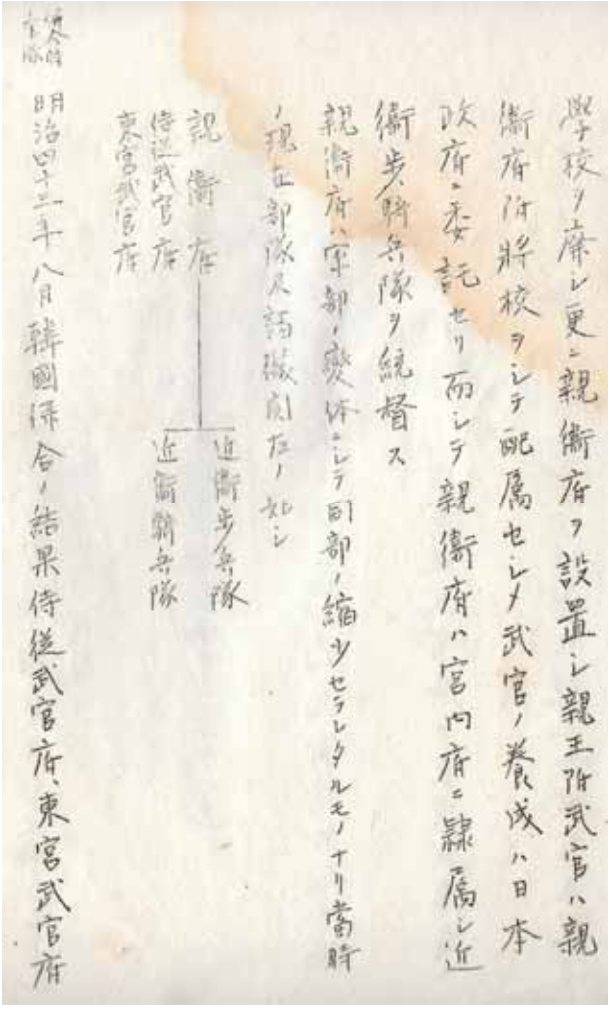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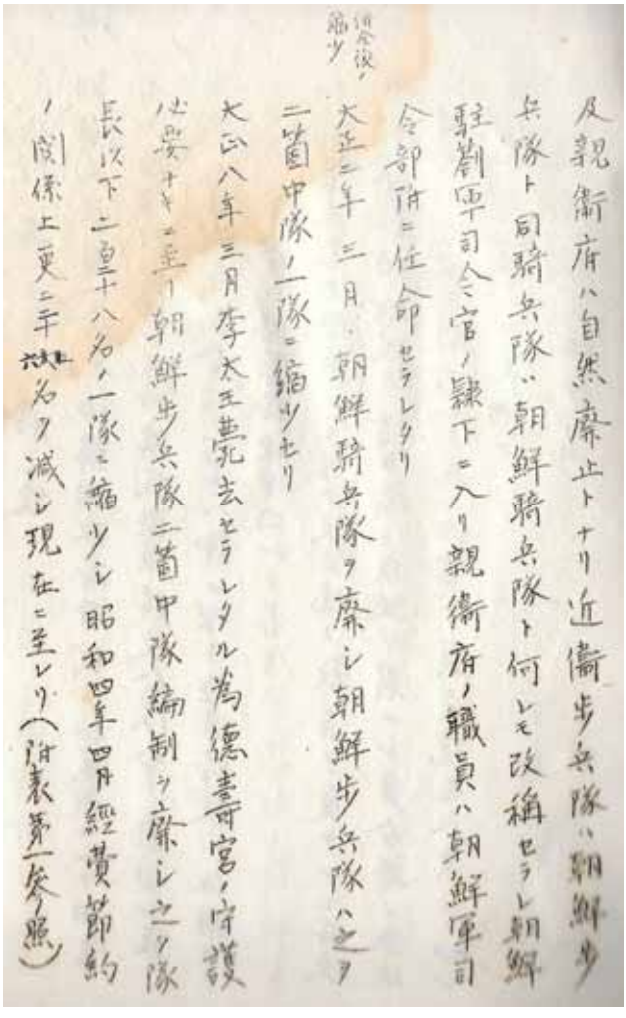

及親衛府ハ自然廢止トナリ近衛歩兵隊ハ朝鮮歩兵隊ト同騎兵隊ハ朝鮮騎兵隊ト何レモ改稱セラレ朝鮮駐劄軍司令官ノ隷下ニ入リ親衛府ノ職員ハ朝鮮軍司令部附ニ任命セラレタリ

（後ノ縮少）

大正二年三月朝鮮騎兵隊ヲ廢シ朝鮮歩兵隊ハ之ヲ二箇中隊ノ一隊ニ縮少セリ

大正八年三月李太王薨去セラレタル為德壽宮ノ守護ノ必要ナキニ至リ朝鮮歩兵隊二箇中隊編制ヲ廢シ之ヲ隊長以下二百十八名ノ一隊ニ縮少シ昭和四年四月經費節約ノ關係上更ニ十六名ヲ減シ現在ニ至レリ（附表第一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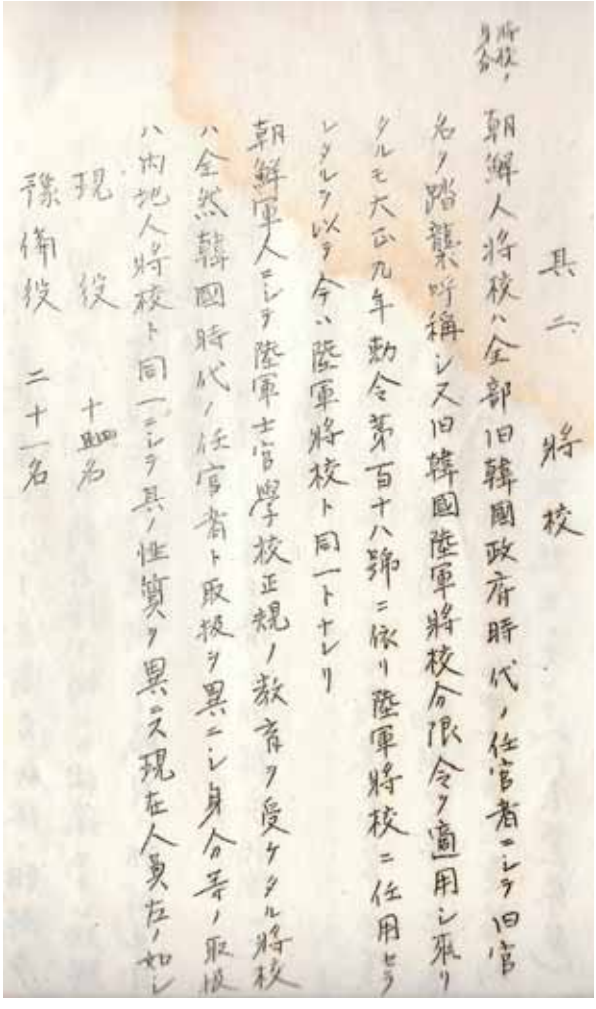

其二 将校

将校ノ分

朝鮮人将校ハ全部旧韓國政府時代ノ任官者ニシテ旧官名ノ踏襲呼稱シ又旧韓國陸軍将校令限令ノ適用シ來リタルモ大正九年勅令第百十八號ニ依リ陸軍将校ニ任用セラレタルヲ以テ今ハ陸軍将校ト同一トナレリ

朝鮮軍人ニシテ陸軍士官學校正規ノ教育ヲ受ケタル将校ハ全然韓國時代ノ任官者ト取扱ヲ異ニシ身分等ノ取扱ハ内地人将校ト同一ニシテ其ノ性質ノ異ナル現在人員左ノ如シ

現役 十四名

豫備役 二十一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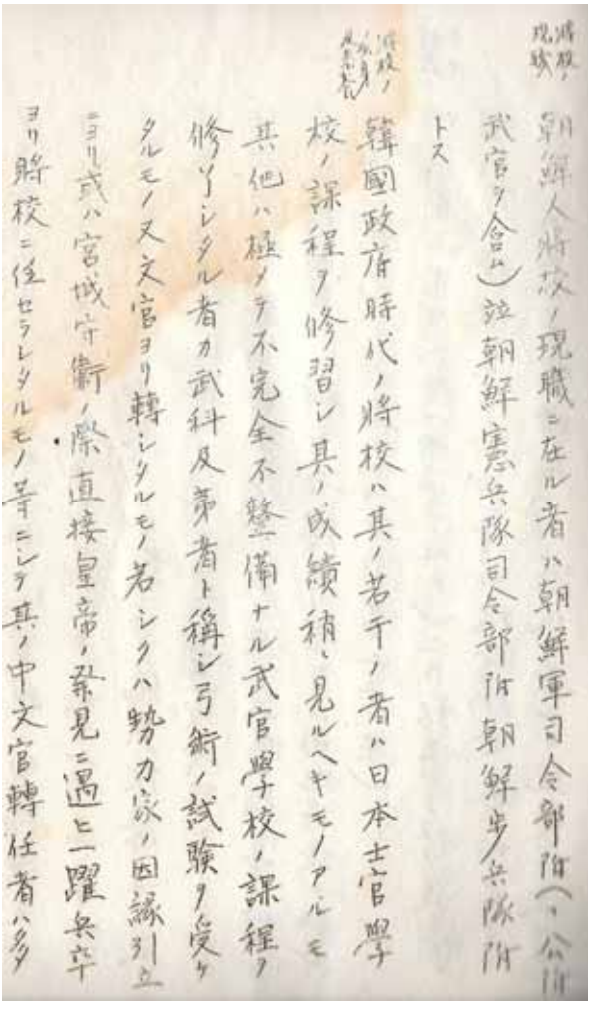

朝鮮人將校ノ現職ニ在ル者ハ朝鮮軍司令部附（ノ外
武官ノ含ム）並朝鮮憲兵隊司令部附朝鮮歩兵隊附
トス

將校ノ
ソノ他ノ
韓國政府時代ノ將校ハ其ノ若干ノ者ハ日本士官學
校ノ課程ヲ修習シ其ノ成績稍見ルヘキモノアルモ
其他ハ概ネ不完全不整備ナル武官學校ノ課程ノ
修了シタル者カ武科及第者ト稱シ弓術ノ試驗ヲ受ケ
タルモノ又文官ヨリ轉シタルモノ若シクハ勢力家ノ因縁引立
ニヨリ或ハ宮城守衛ノ際直接皇帝ノ眷見ニ過ヒ一躍兵卒
ヨリ將校ニ任セラレタルモノ等ニシテ其ノ中文官轉任者ハ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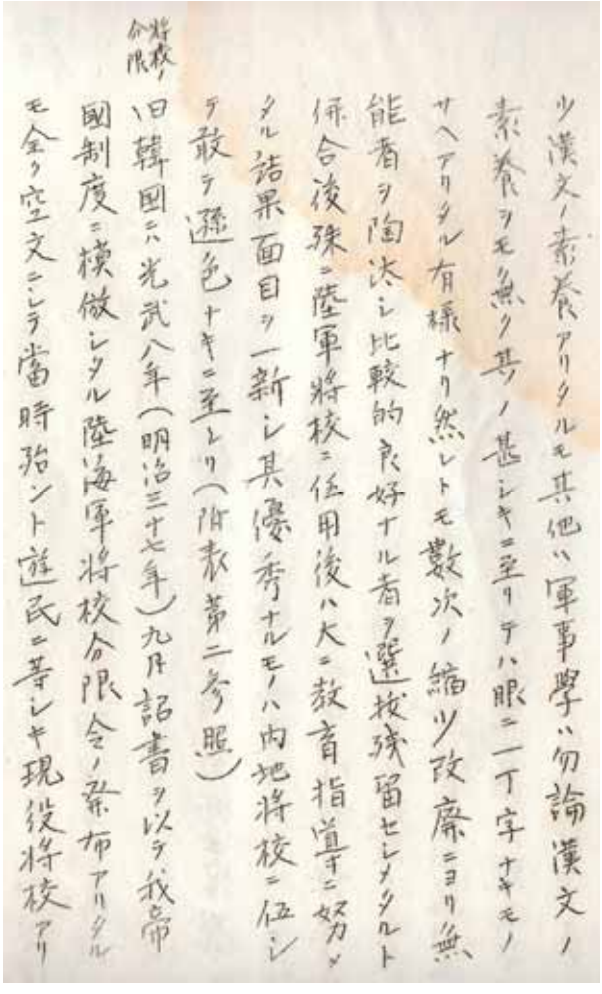

少漢文ノ素養アリタルモ其他ハ軍事學ハ勿論漢文ノ
素養ヲモ缺ク事ノ甚シキニ至リテハ眼ニ一丁字ナキモノ
サヘアリタル有様ナリ然レトモ數次ノ縮少改廃ニヨリ無
能者ヲ淘汰シ比較的良好ナル者ヲ選拔殘留セシメタルト
併合後殊ニ陸軍將校ニ任用後ハ大ニ教育指導ニ努メ
タル結果面目ヲ一新シ其優秀ナルモノハ内地將校ニ伍シ
テ敢テ遜色ナキニ至レリ（附表第二參照）

將校ノ令限

旧韓國ニハ光武八年（明治三十七年）九月詔書ヲ以テ我帝
國制度ニ模倣シタル陸海軍將校令限令ノ発布アリタル
モ全ク空文ニシテ當時殆ント遊民ニ等シキ現役將校ア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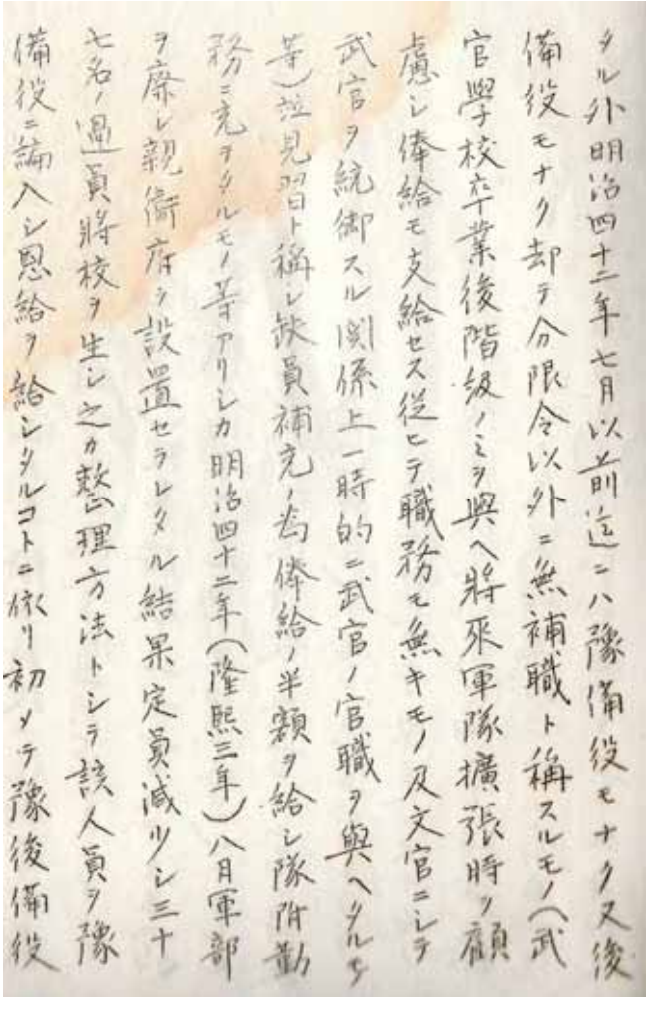

タル外明治四十二年七月以前迄ニ入隊備役ヲナク又後備役ヲナク却テ今限令以外ニ無補職ト稱スルモノ(武官學校卒業後階級ノミヲ與ヘ將來軍隊擴張時ノ顧慮ニ俸給モ支給セス從ヒテ職務モ無キモノ及文官ニシテ武官ヲ統御スル關係上一時的ニ武官ノ官職ヲ與ヘタルモノ等)並見習ト稱シ缺員補充ノ爲俸給ノ半額ヲ給シ隊附勤務ニ充ツルモノ等アリシカ明治四十二年(隆熙三年)八月軍部ヲ廢シ親衛府ヲ設置セラレタル結果定員減少シ三十七名ノ過員將校ヲ生シ之カ整理方法トシテ該人員ヲ豫備役ニ編入シ恩給ヲ給シタルコトニ依リ初メテ豫後備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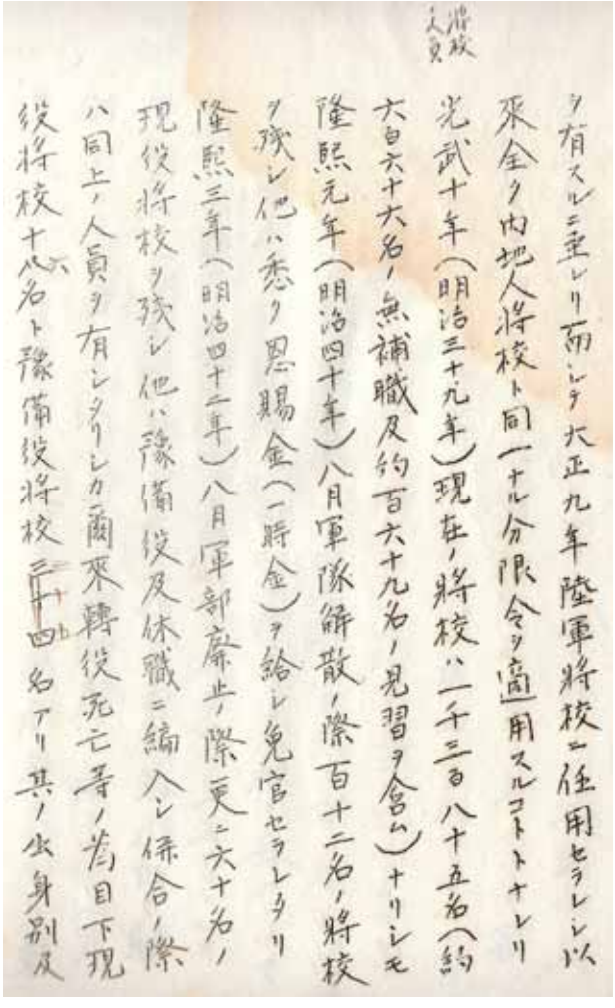

ヲ有スルニ至レリ而シテ大正九年陸軍将校ニ任用セラレシ以
來全ク内地人将校ト同一ナル分限令ノ適用スルコトトナレリ
光武十年（明治三十九年）現在ノ将校ハ一千三百八十五名（約
六百六十六名ノ無補職及約百六十九名ノ見習ヲ含ム）ナリシモ
隆熙元年（明治四十年）八月軍隊解散ノ際百十二名ノ将校
ヲ残シ他ハ悉ク恩賜金（一時金）ヲ給シ免官セラレタリ
隆熙三年（明治四十二年）八月軍部廃止ノ際更ニ六十名ノ
現役将校ヲ残シ他ハ豫備役及休職ニ編入シ係合ノ際
八同上ノ人員ヲ有シタリシカ爾來轉役死亡等ノ為目下現
役将校十八名ト豫備役将校三十四名アリ其ノ出身別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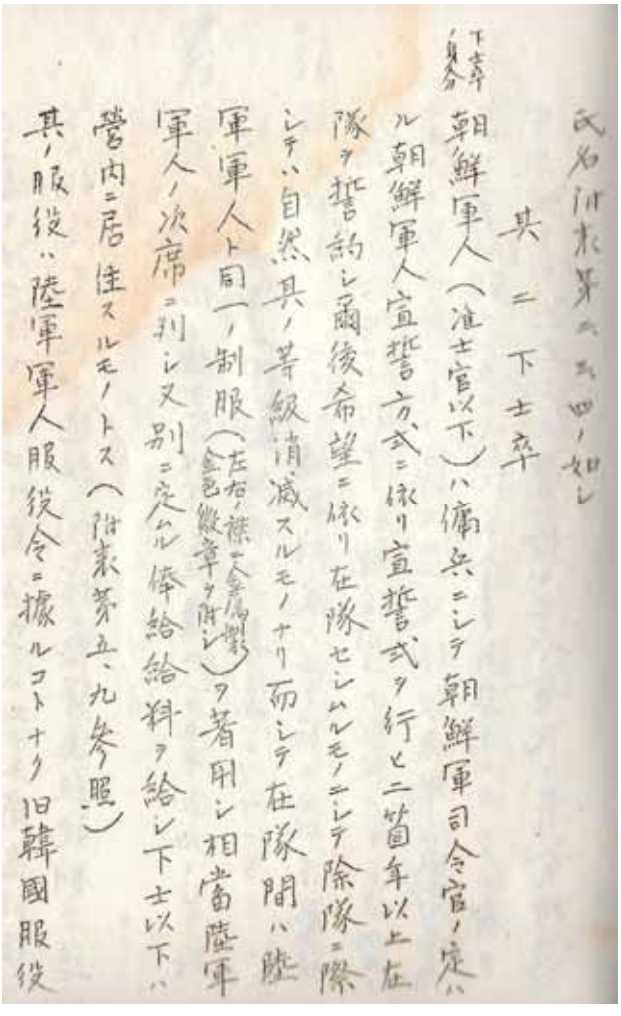

氏名ヲ附表第二三四ノ如シ

其二 下士卒

(下士卒ノ分)

朝鮮軍人(准士官以下)ハ傭兵ニシテ朝鮮軍司令官ノ定ムル朝鮮軍人宣誓方式ニ依リ宣誓式ヲ行ヒ二箇年以上在隊ヲ誓約シ爾後希望ニ依リ在隊セシメルルモノニシテ除隊ニ際シテハ自然其ノ等級消滅スルモノトリ而シテ在隊間ハ陸軍軍人ト同一ノ制服(左右ノ襟ニ金属製金色徽章ヲ附シ)ヲ着用シ相當陸軍軍人ノ次席ニ列シ又別ニ定ムル俸給給料ヲ給シ下士以下ハ營内ニ居住スルモノトス(附表第五、九参照)

其ノ服役ハ陸軍軍人服役令ニ據ルコトナク旧韓國服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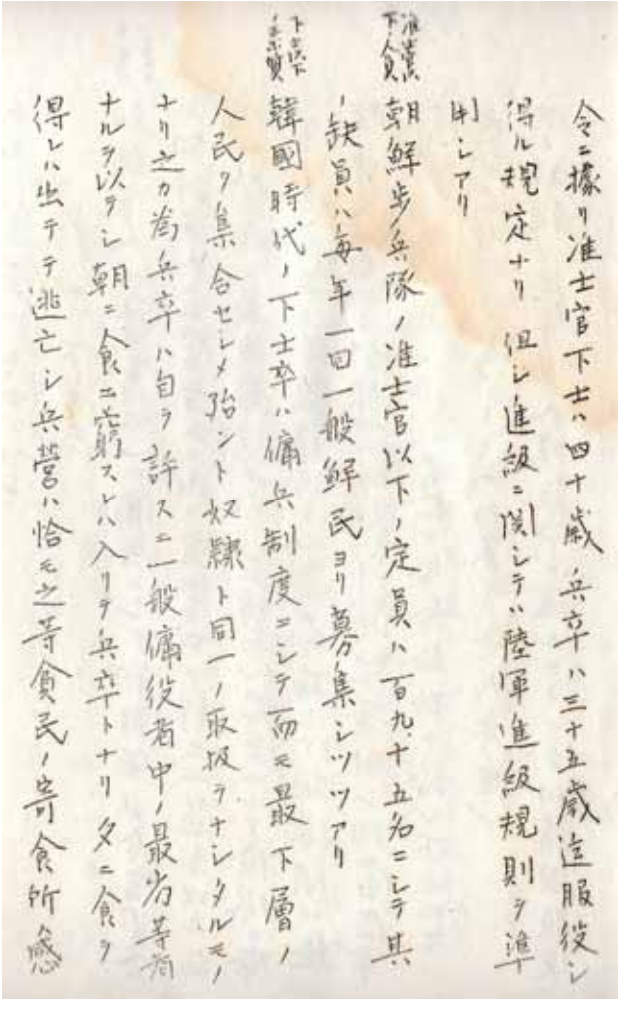

令ニ據リ准士官下士ハ四十歳兵卒ハ三十五歳迄服役シ得ル規定ナリ但シ進級ニ関シテハ陸軍進級規則ヲ準用シアリ

朝鮮歩兵隊ノ准士官以下ノ定員ハ百九十五名ニシテ其ノ缺員ハ毎年一回一般鮮民ヨリ募集シツツアリ

韓國時代ノ下士卒ハ傭兵制度ニシテ而モ最下層ノ人民ヲ集合セシメ殆ンド奴隷ト同一ノ取扱ヲナシタルモノナリ之カ為兵卒ハ自ラ許スニ一般傭役者中ノ最劣等者ナルヲ以テシ朝ニ食ニ窮スレハ入リテ兵卒トナリ夕ニ食ヲ得レハ出テテ逃亡シ兵營ハ恰モ之等貧民ノ寄食所ノ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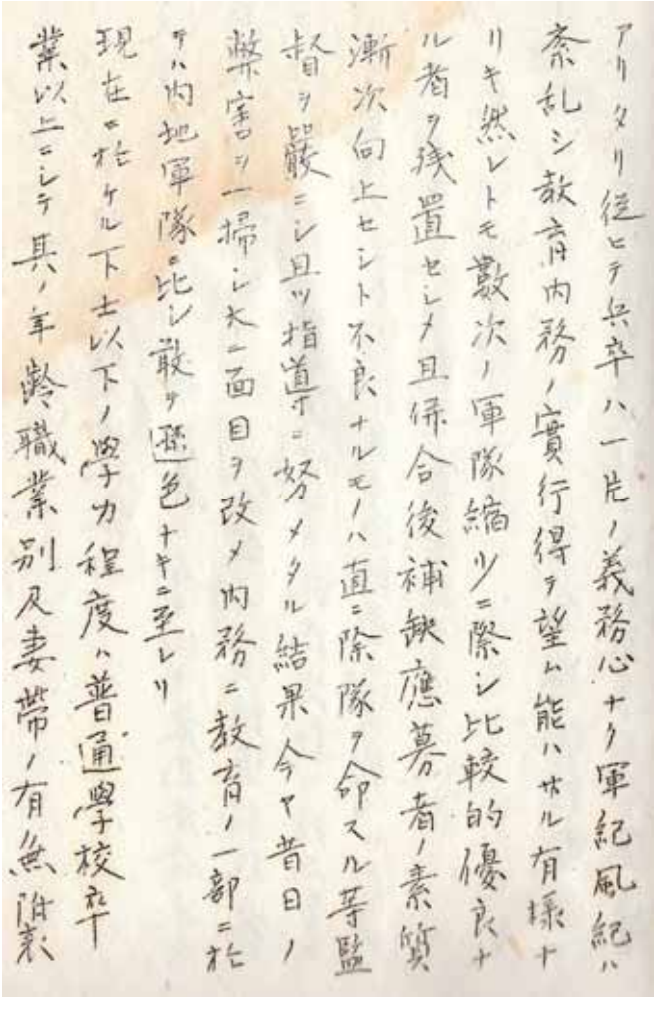

アリタリ往ヒテ兵卒ハ一片ノ義務心ナク軍紀風紀ハ紊乱シ教育内務ノ實行得ヲ望ム能ハサル有様ナリキ然レトモ數次ノ軍隊縮少ニ際シ比較的優良ナル者ヲ残置セシメ且係合後補缺應募者ノ素質漸次向上セシト不良ナルモノハ直ニ除隊ヲ命スル等監督ヲ嚴ニシ且ツ指導ニ努メタル結果今ヤ昔日ノ弊害ヲ一掃シ大ニ面目ヲ改メ内務ニ教育ノ一部ニ於テハ内地軍隊ニ比シ敢テ遜色ナキニ至レリ

現在ニ於ケル下士以下ノ學力程度ハ普通學校在学以上ニシテ其ノ年齢職業別及妻帯ノ有無附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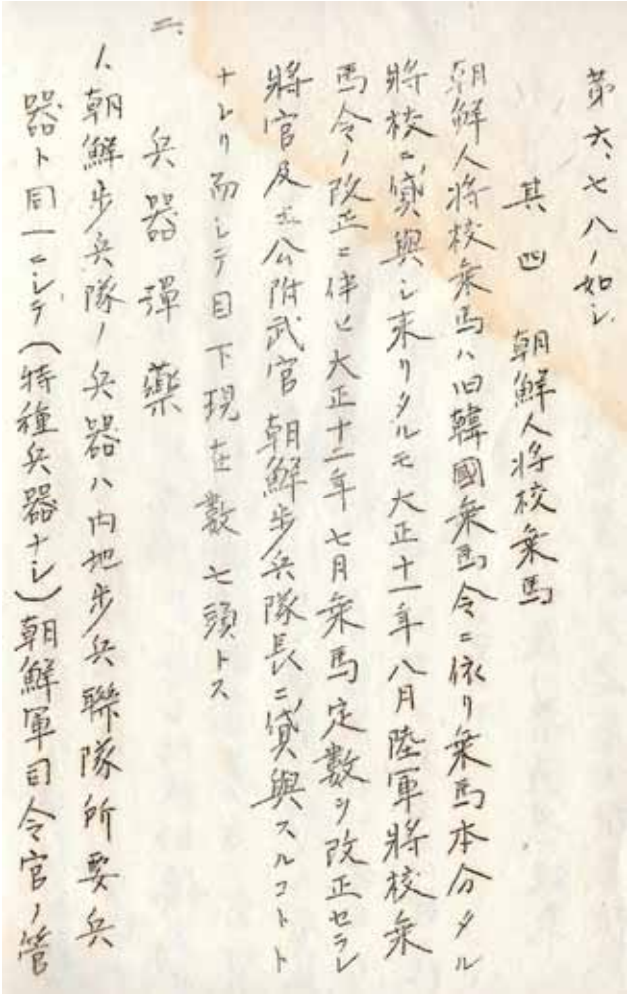

第六、七八ノ如シ

其四 朝鮮人將校乘馬

朝鮮人將校乘馬ハ旧韓國乘馬令ニ依リ乘馬本分タル將校ニ貸與シ來リタルモ大正十一年八月陸軍將校乘馬令ノ改正ニ伴ヒ大正十二年七月乘馬定數ノ改正セラレ將官及ビ公附武官朝鮮歩兵隊長ニ貸與スルコトトナレリ而シテ目下現在數七頭トス

二、兵器彈藥

イ、朝鮮歩兵隊ノ兵器ハ内地歩兵聯隊所要兵器ト同一ニシテ（特種兵器ナシ）朝鮮軍司令官ノ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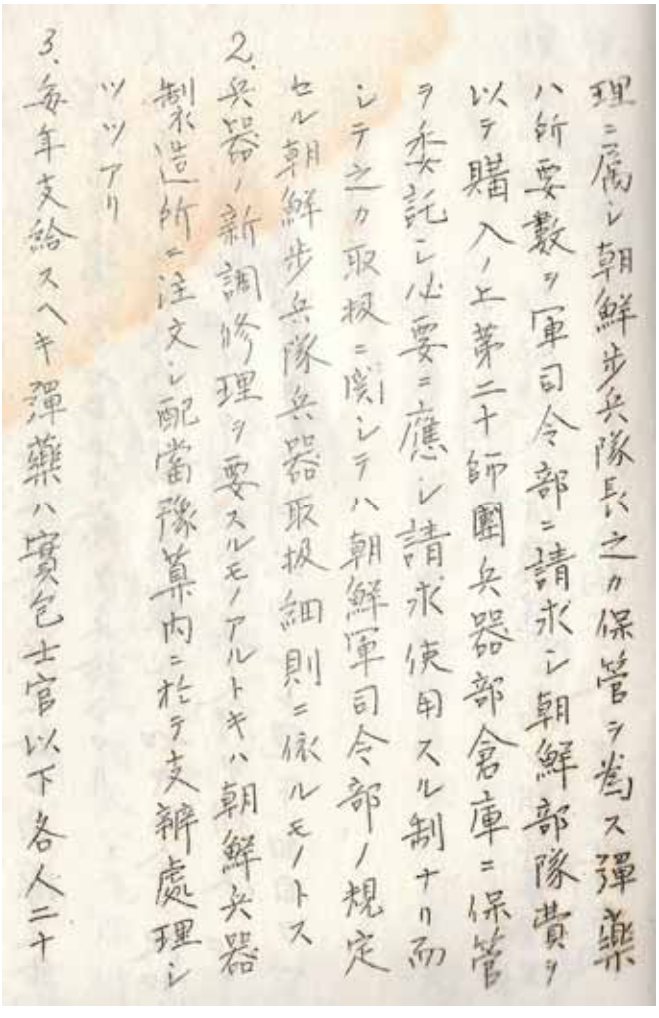

理ニ属シ朝鮮歩兵隊長之カ保管ヲ為ス弾薬
ハ所要数ヲ軍司令部ニ請求シ朝鮮部隊費ヲ
以テ購入ノ上第二十師團兵器部倉庫ニ保管
ヲ委託シ必要ニ應シ請求使用スル制ナリ而
シテ之カ取扱ニ関シテハ朝鮮軍司令部ノ規定
セル朝鮮歩兵隊兵器取扱細則ニ依ルモノトス
2. 兵器ノ新調修理ヲ要スルモノアルトキハ朝鮮兵器
製造所ニ注文シ配當隊基内ニ於テ支辨處理シ
ツツアリ
3. 毎年支給スヘキ弾薬ハ實包士官以下各人二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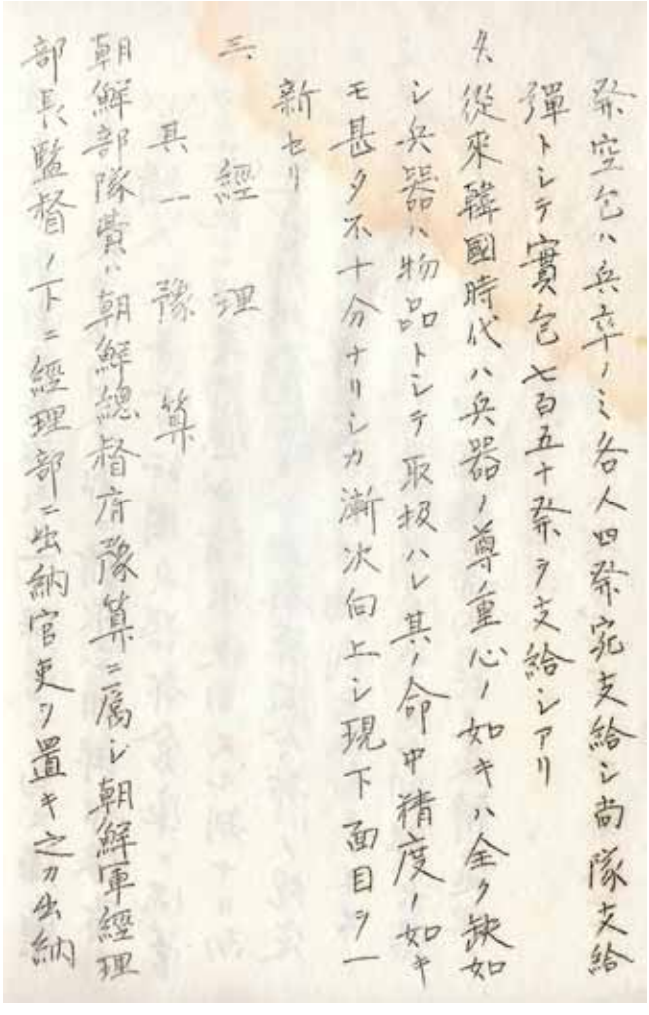

發空包ハ兵卒ノミ各人四發宛支給シ前隊支給
彈トシテ實包七百五十發ヲ支給シアリ
又從來韓國時代ハ兵器ノ尊重心ノ如キハ全ク缺如
シ兵器ハ物品トシテ取扱ハレ其ノ命中精度ノ如キ
モ甚タ不十分ナリシカ漸次向上シ現下面目ヲ一
新セリ

三、經理

其一 豫算

朝鮮部隊費ハ朝鮮總督府豫算ニ屬シ朝鮮軍經理
部長監督ノ下ニ經理部ニ出納官吏ヲ置キ之カ出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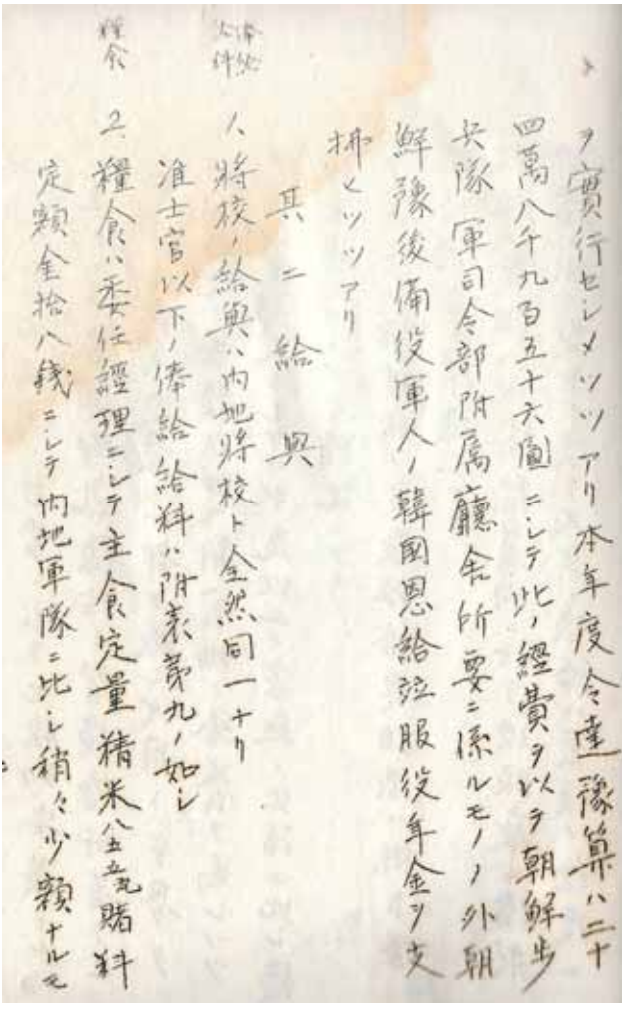

ノ實行セシメツツアリ本年度令達豫算ハ二十
四萬八千九百五十六圓ニシテ此ノ經費ヲ以テ朝鮮歩
兵隊軍司令部附屬廳舍所要ニ係ルモノノ外朝
鮮豫後備役軍人ノ韓國恩給並服役年金ノ支
拂ヒニツツアリ

其ニ給與

(俸給ノ外)
ニ將校ノ給與ハ内地將校ト全然同一ナリ
准士官以下ノ俸給給料ハ附表第九ノ如シ
(糧食)
ニ糧食ハ委任經理ニシテ主食定量精米八五立賄料
定額金拾八錢ニシテ内地軍隊ニ比シ稍々少額ナル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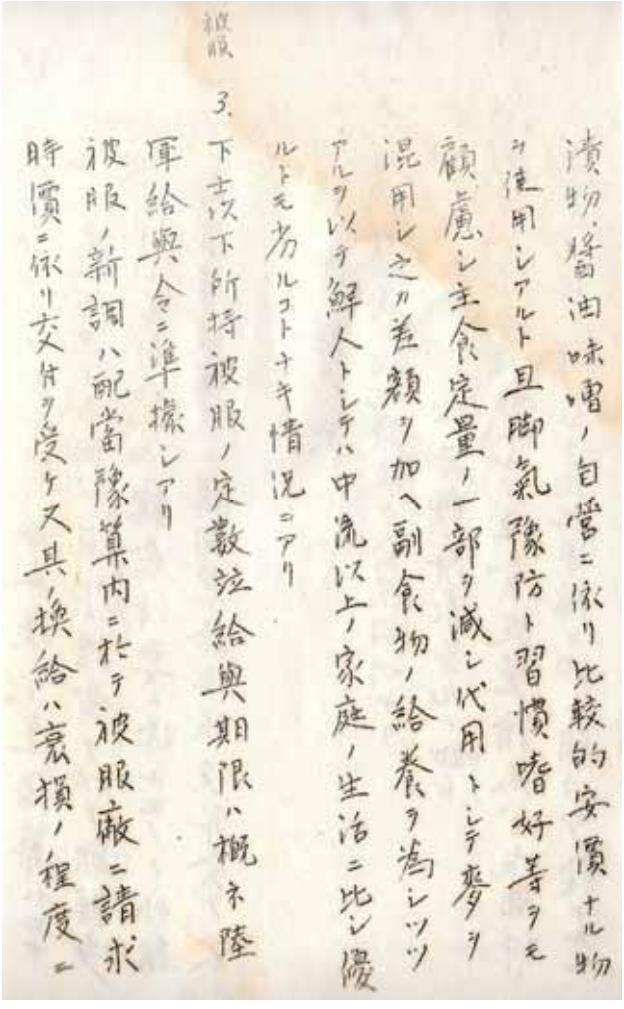

漬物醤油味噌ノ自営ニ依リ比較的安價ナル物ヲ使用シアルト且脚氣豫防ト習慣嗜好等ヲ顧慮シ主食定量ノ一部ヲ減ジ代用トシテ麥ヲ混用シ之ノ差額ヲ加ヘ副食物ノ給養ヲ為シツツアルヲ以テ鮮人トシテハ中流以上ノ家庭ノ生活ニ比シ優ルトモ劣ルコトナキ情況ニアリ

被服

3. 下士以下所持被服ノ定數竝給與期限ハ概ネ陸軍給與令ニ準據シアリ

被服ノ新調ハ配當豫算内ニ於テ被服廠ニ請求時價ニ依リ交付ヲ受ケ又其ノ換給ハ裏損ノ程度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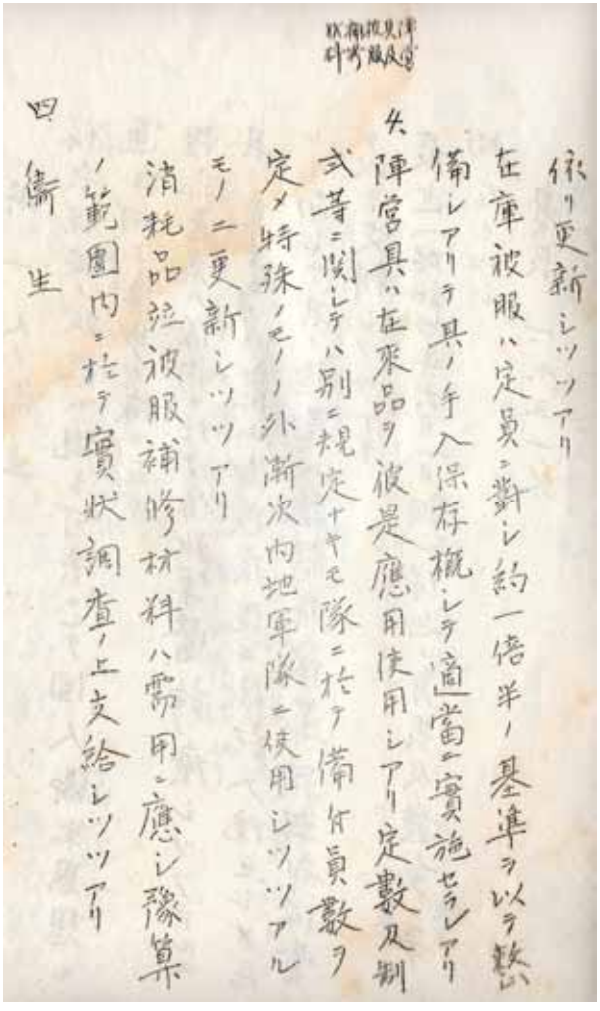

依リ更新シツツアリ
在庫被服ハ定員ニ對シ約一倍半ノ基準ヲ以テ整
備シアリテ其ノ手入保存概シテ適當ニ實施セラレアリ
尚陣営具ハ在來品ヲ被リ應用使用シアリ定數及制
式等ニ關シテハ別ニ規定セラレ隊ニ於テ備付員數ヲ
定メ特殊ノモノノ外漸次内地軍隊ニ使用シツツアル
モノニ更新シツツアリ
消耗品並被服補修材料ハ需用ニ應ジ豫算
ノ範圍内ニ於テ實狀調査ノ上支給シツツアリ
四 衛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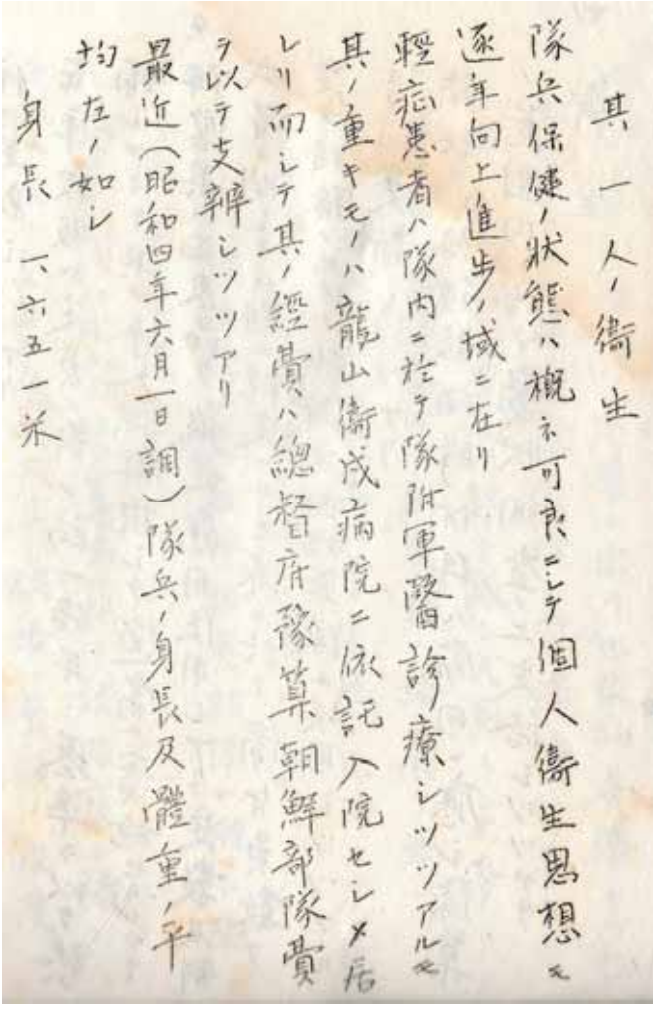

其一 人ノ衛生

隊兵保健ノ狀態ハ概ネ可良ニシテ個人衛生思想モ
逐年向上進歩ノ域ニ在リ
輕症患者ハ隊内ニ於テ隊附軍醫診療シツツアルモ
其ノ重キモノハ龍山衛戍病院ニ依託入院セシメ居
レリ而シテ其ノ經費ハ總督府豫算朝鮮部隊費
ヲ以テ支辨シツツアリ
最近(昭和四年六月一日調)隊兵ノ身長及體重ノ平
均左ノ如シ
身長 一、六五一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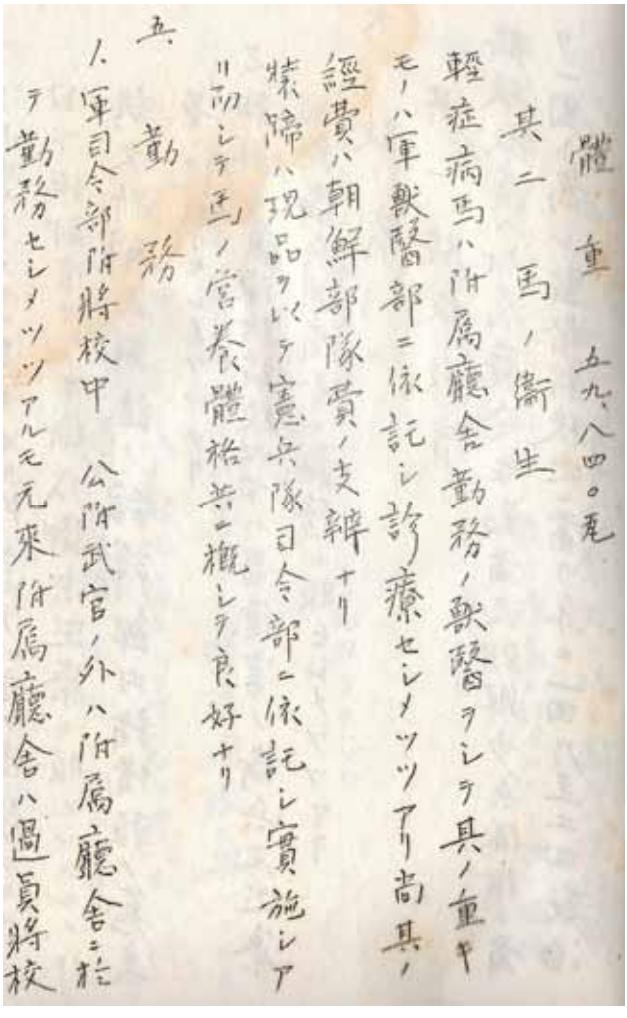

體重　五九、八四。瓦

其二　馬ノ衛生

輕症病馬ハ附屬廳舍勤務ノ獸醫ヲシテ其ノ重キモノハ軍獸醫部ニ依託シ診療セシメツツアリ尚其ノ經費ハ朝鮮部隊費ノ支辨ナリ

紫陰ハ現品ヲシテ憲兵隊司令部ニ依託シ實施シアリ而シテ馬ノ營養體格共ニ概シテ良好ナリ

五、勤務

イ、軍司令部附將校中　公附武官ノ外ハ附屬廳舍ニ於テ勤務セシメツツアルモ元來附屬廳舍ハ過員將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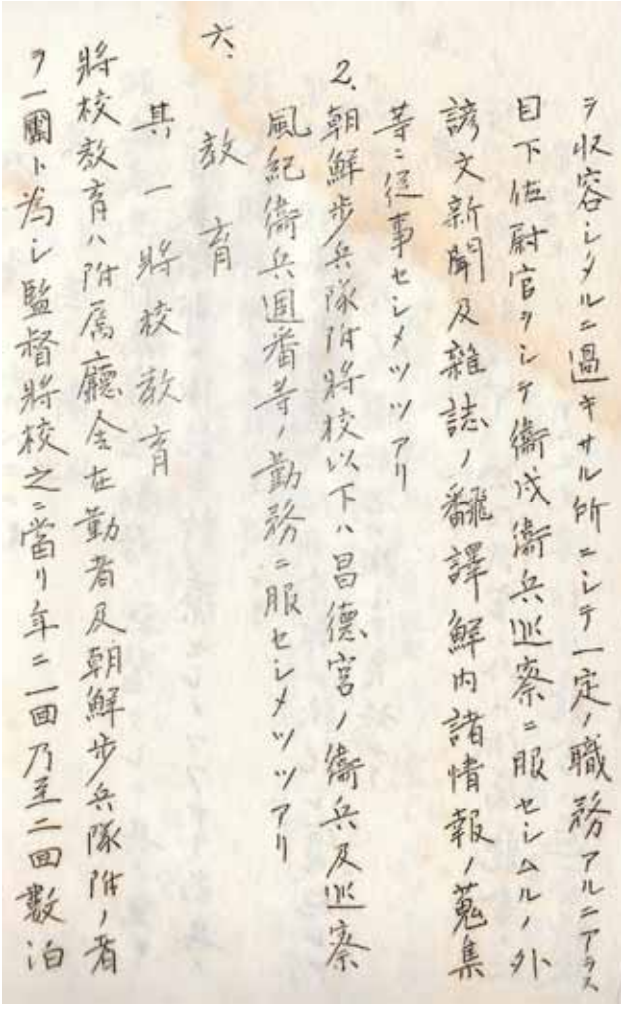

ヲ収容シメルニ過キサル所ニシテ一定ノ職務アルニアラス
目下佐尉官ヲシテ衛戍衛兵巡察ニ服セシムルノ外
諜文新聞及雑誌ノ飜譯鮮内諸情報ノ蒐集
等ニ従事セシメツツアリ
2. 朝鮮歩兵隊附将校以下ハ昌德宮ノ衛兵及巡察
風紀衛兵週番等ノ勤務ニ服セシメツツアリ

六. 教育

其一 将校教育

将校教育ハ附属職全在勤者及朝鮮歩兵隊附ノ者
ヲ一團ト為シ監督将校之ニ當リ年ニ一回乃至二回數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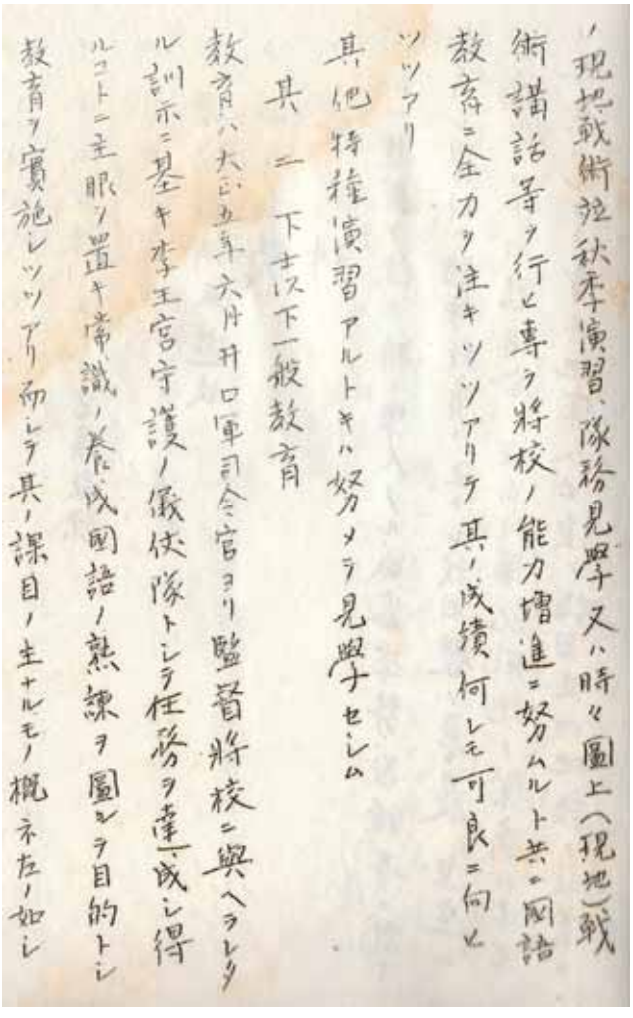

ノ現地戦術並秋季演習、隊務見學又ハ時々園上（現地）戦
術講話等ヲ行ヒ專ラ將校ノ能力增進ニ努ムルト共ニ國語
教育ニ全力ヲ注キツツアリテ其ノ成績何レモ可良ニ向ヒ
ツツアリ
其他特種演習アルトキハ努メテ見學セシム

其二　下士以下一般教育

教育ハ大正五年六月廿日陸軍司令官ヨリ監督將校ニ與ヘラレタ
ル訓示ニ基キ李王宮守護ノ儀仗隊トシテ任務ヲ達成シ得
ルコトニ主眼ヲ置キ常識ノ養成國語ノ熟練ヲ圖ルヲ目的トシ
教育ヲ實施シツツアリ而シテ其ノ課目ノ主ナルモノ概ネ左ノ如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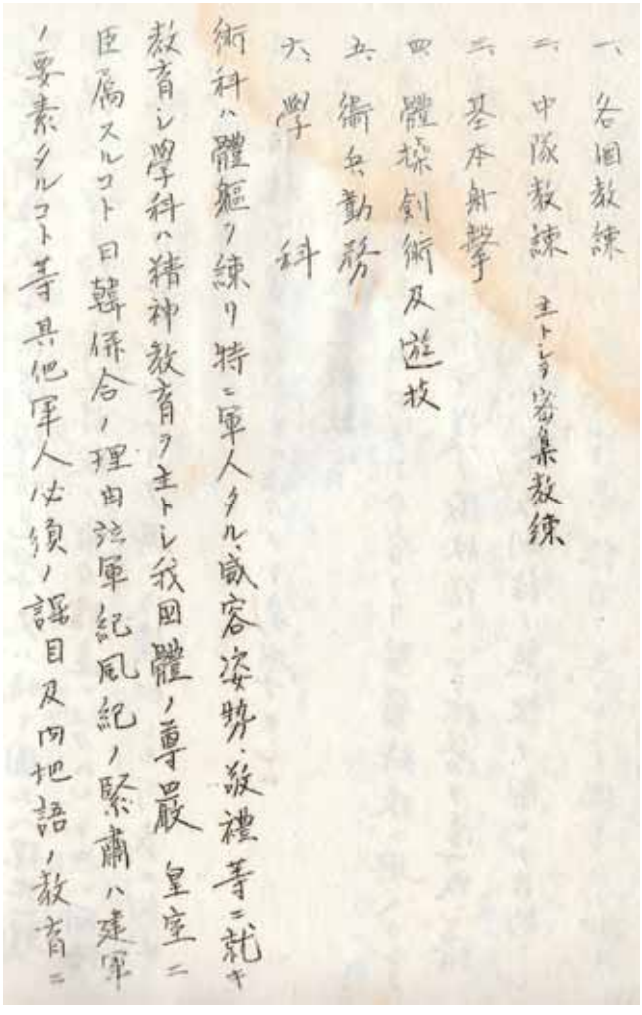

一、各個教練
二、中隊教練 主トシテ密集教練
三、基本射撃
四、體操、劍術及遊技
五、衛兵勤務
六、學 科
術科ハ體軀ノ練リ特ニ軍人タルノ威容姿勢、敬禮等ニ就キ
教育シ學科ハ精神教育ヲ主トシ我國體ノ尊嚴 皇室ニ
臣屬スルコト日韓係合ノ理由竝軍紀風紀ノ緊肅ハ建軍
ノ要素タルコト等其他軍人必須ノ課目及内地語ノ教育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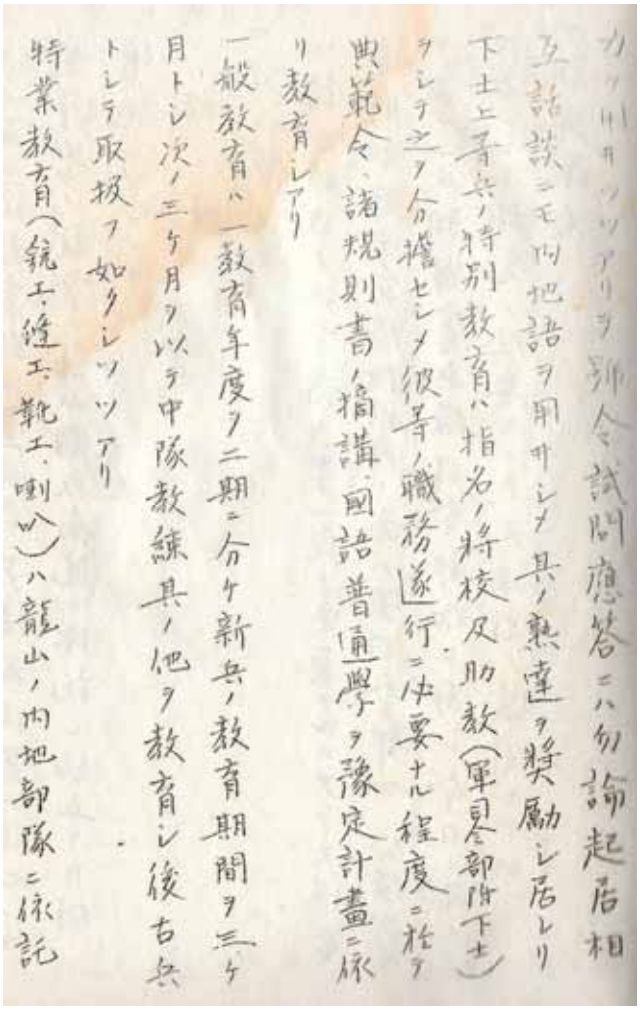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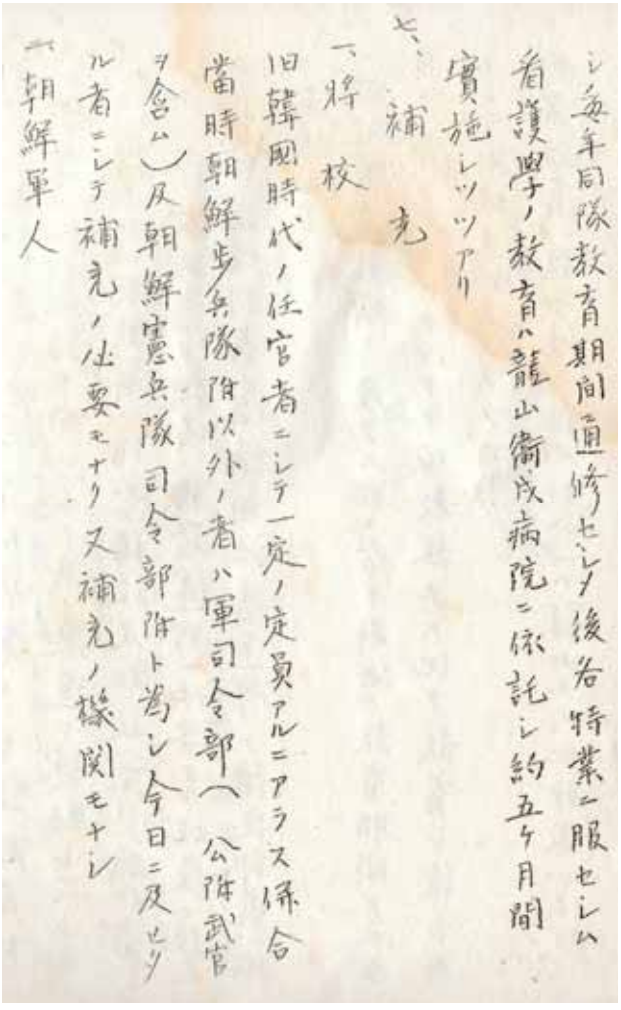

レ毎年同隊教育期間ニ通修セシメ後各特業ニ服セシム
看護學ノ教育ハ龍山衛戍病院ニ依託レ約五ヶ月間
實施レツツアリ

七、補充

一、將校

旧韓國時代ノ任官者ニシテ一定ノ定員アルニアラス係合
當時朝鮮歩兵隊附以外ノ者ハ軍司令部(公附武官
ヲ含ム)及朝鮮憲兵隊司令部附ト為レ今日ニ及ヒ
ル者ニシテ補充ノ必要モナリ又補充ノ機関モナシ

二、朝鮮軍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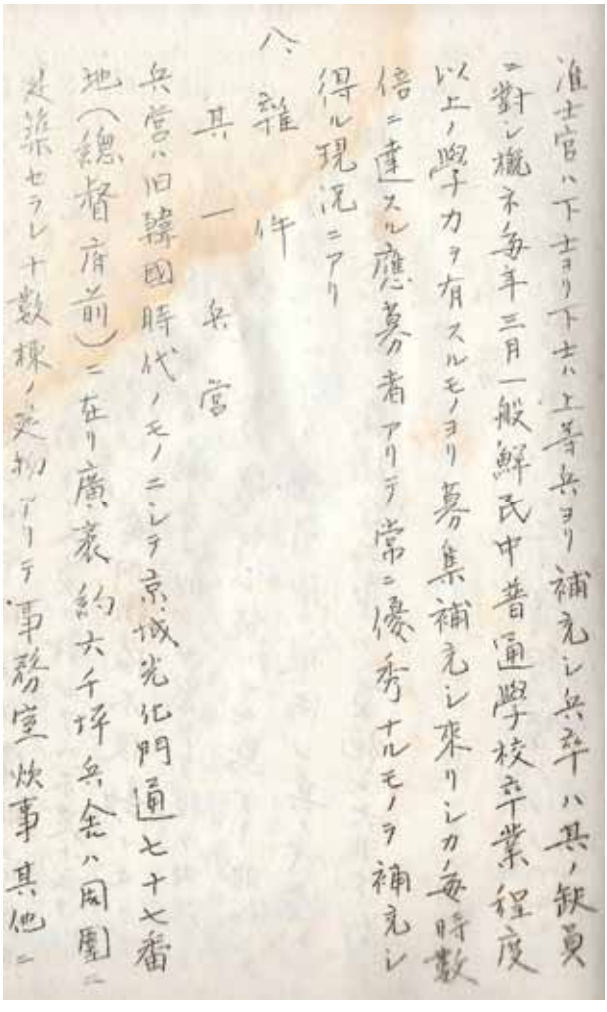

准士官ハ下士ヨリ下士ハ上等兵ヨリ補充シ兵卒ハ其ノ缺員ニ對シ概ネ毎年三月一般鮮民中普通學校卒業程度以上ノ學力ヲ有スルモノヨリ募集補充シ來リシカ毎時數倍ニ達スル應募者アリテ常ニ優秀ナルモノヲ補充シ得ル現況ニアリ

八 雜 件

其 一 兵 營

兵營ハ舊韓國時代ノモノニシテ京城光化門通七十七番地（總督府前）ニ在リ廣袤約六千坪兵舍ハ回廊ニ連築セラレ十數棟ノ建物アリテ事務室炊事其他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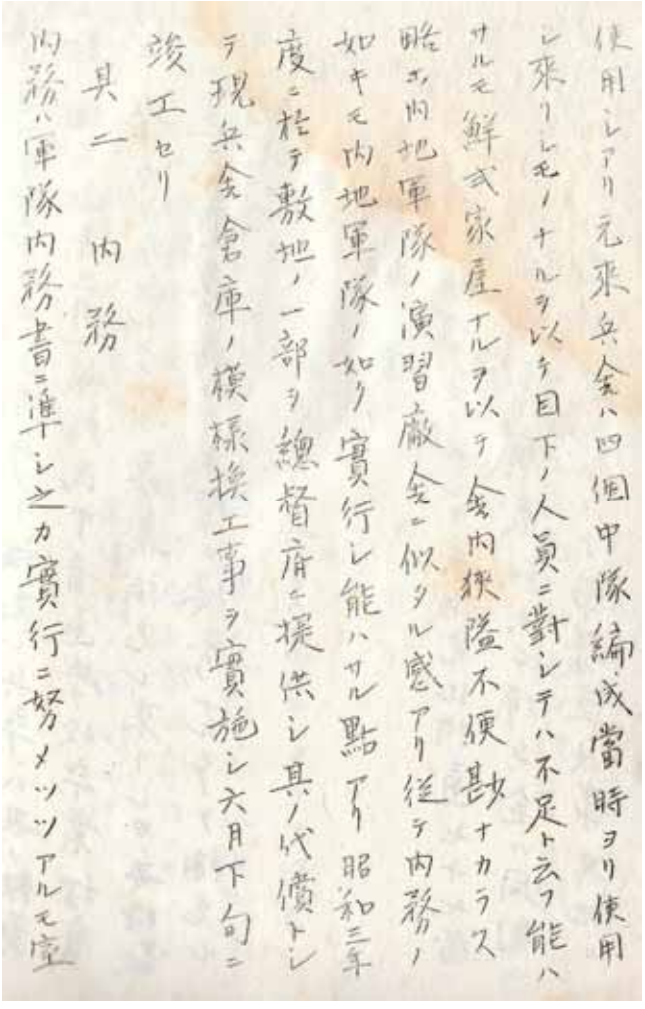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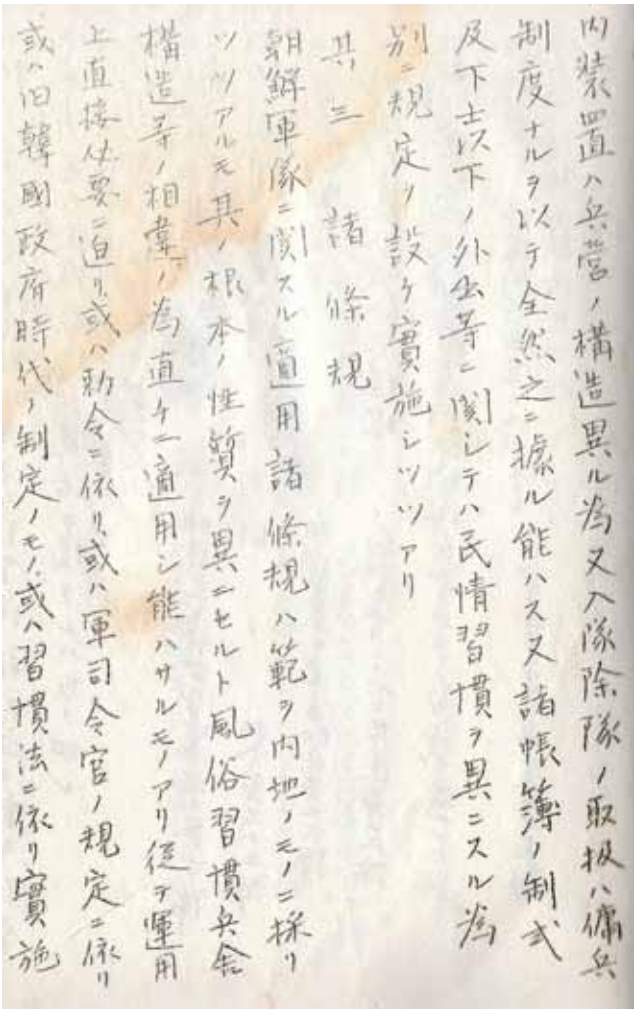

内業置ハ兵営ノ構造異ル為又ハ隊除隊ノ取扱ハ陸兵
制度ナルヲ以テ全然之ニ據ル能ハス又諸帳簿ノ制式
及下士以下ノ外出等ニ関シテハ民情習慣ヲ異ニスル為
別ニ規定ノ設ケ實施シツツアリ

其三　諸條規

朝鮮軍隊ニ関スル適用諸條規ハ概ネ内地ノモノニ採リ
ツツアルモ其ノ根本ノ性質ヲ異ニセルト風俗習慣兵舎
構造等ノ相違ノ為直チニ適用シ能ハサルモノアリ従テ運用
上直接必要ニ迫リ或ハ勅令ニ依リ或ハ軍司令官ノ規定ニ依リ
或ハ旧韓國政府時代ノ制定ノモノ或ハ習慣法ニ依リ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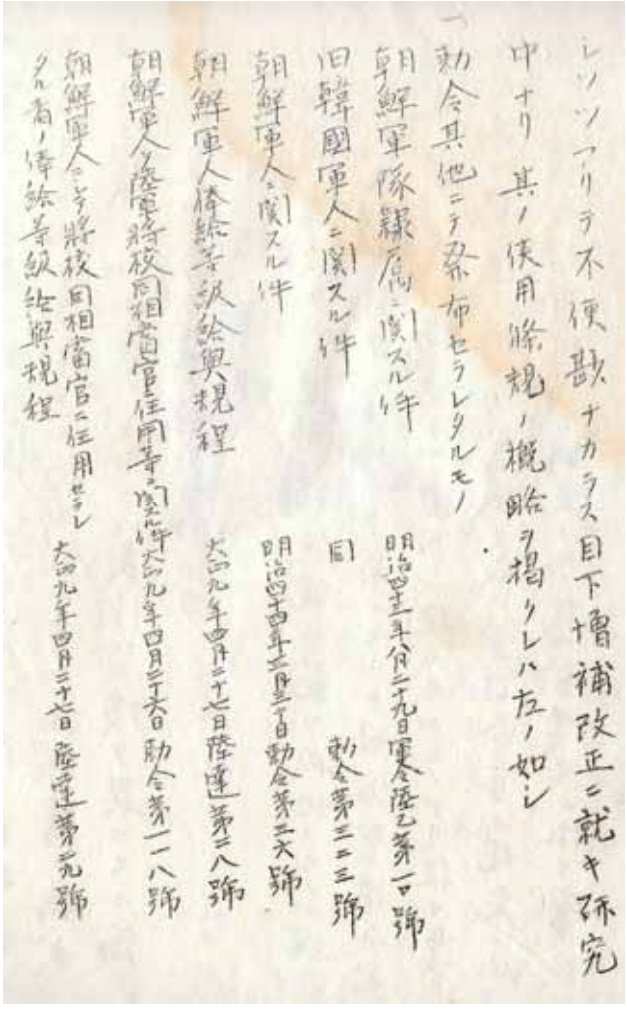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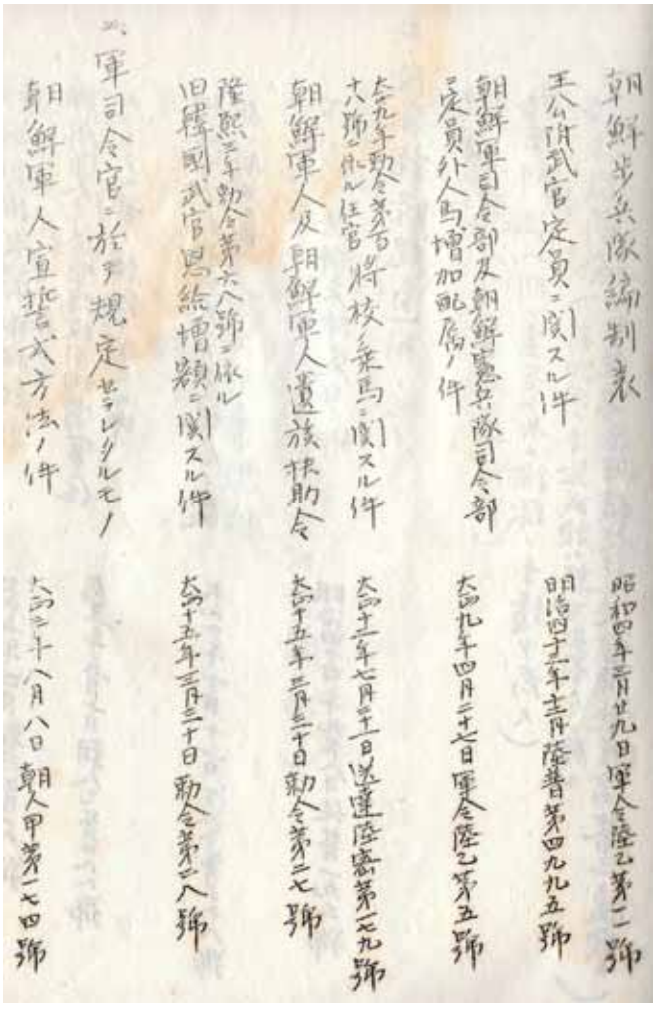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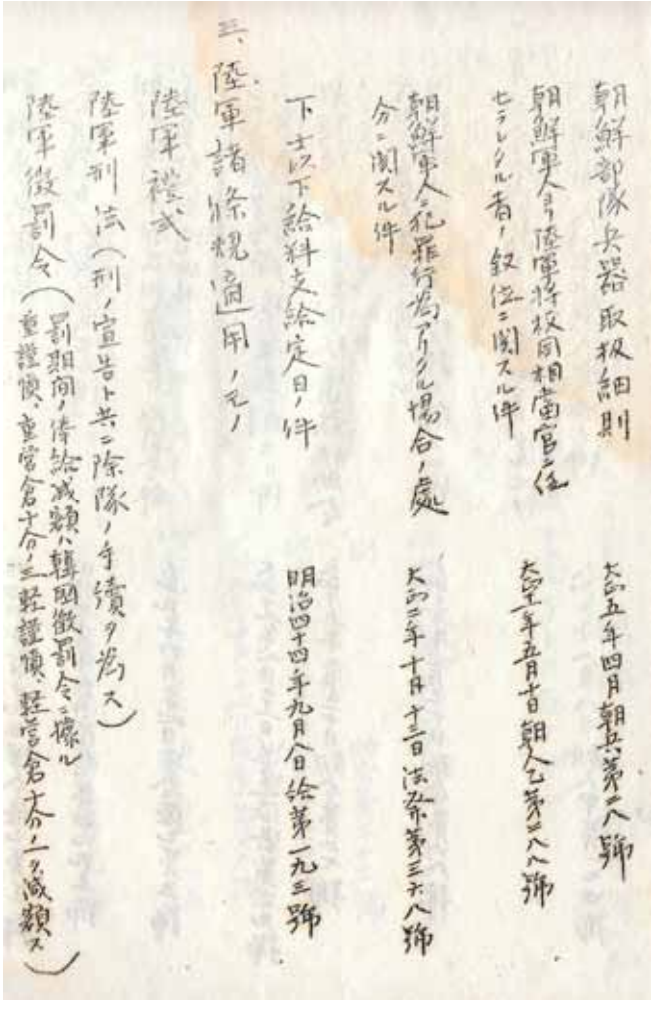
朝鮮部隊兵器取扱細則
大正五年四月勅令第二八號
朝鮮軍人ヲ陸軍將校同相當官ニ任セラレタル者ノ敘位ニ關スル件
大正二年五月廿日勅令第二八號
朝鮮軍人ノ犯罪行爲アリタル場合ノ處分ニ關スル件
大正二年十月十二日法律第三六號
下士以下給料支給定日ノ件
明治四十四年九月令達第一九三號
三、陸軍諸條規適用ノモノ
陸軍禮式
陸軍刑法（刑ノ宣告ト共ニ除隊ノ手續ヲ爲ス）
陸軍徵罰令（罰期前ノ俸給減額ハ懲罰令ニ據ル
重謹愼、重營倉七分ノ三、輕謹愼、輕營倉七分ノ一ヲ減額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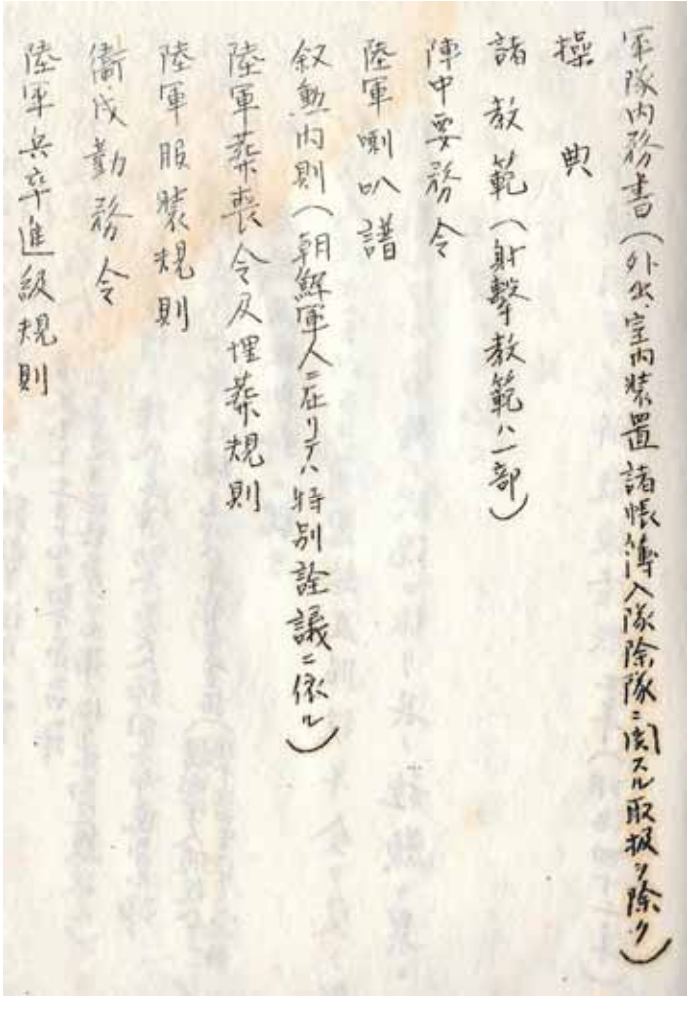

軍隊内務書（外出、室内禁置諸帳簿入隊除隊ニ関スル取扱ヲ除ク）
操典
諸教範（射撃教範ハ一部）
陣中要務令
陸軍喇叭譜
教練内則（朝鮮軍人ニ在リテハ特別詮議ニ依ル）
陸軍葬儀令及埋葬規則
陸軍服装規則
衛戍勤務令
陸軍兵卒進級規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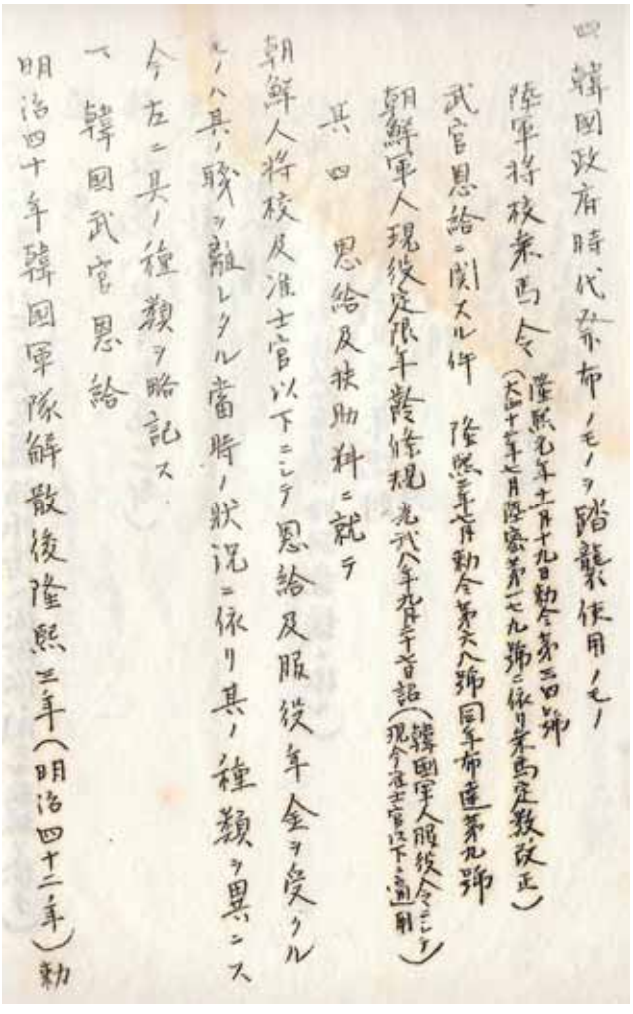

四 韓國政府時代發布ノモノヲ踏襲使用ノモノ

陸軍將校進退令（隆熙元年十月十九日勅令第三四號（大正十年七月陸密第二七九號ニ依リ其ノ題名ヲ改正）

武官恩給ニ關スル件（隆熙二年七月勅令第六八號同年施行第九號）

朝鮮軍人現役定限年齡條規（光武八年九月十日詔勅（韓國軍人服役令ニテ現今准士官以下ニ適用）

其四 恩給及扶助料ニ就テ

朝鮮人將校及准士官以下ニシテ恩給及服役年金ヲ受クルモノハ其ノ職ヲ離レタル當時ノ狀況ニ依リ其ノ種類ヲ異ニス

今左ニ其ノ種類ヲ略記ス

一 韓國武官恩給

明治四十年韓國軍隊解散後隆熙三年（明治四十二年）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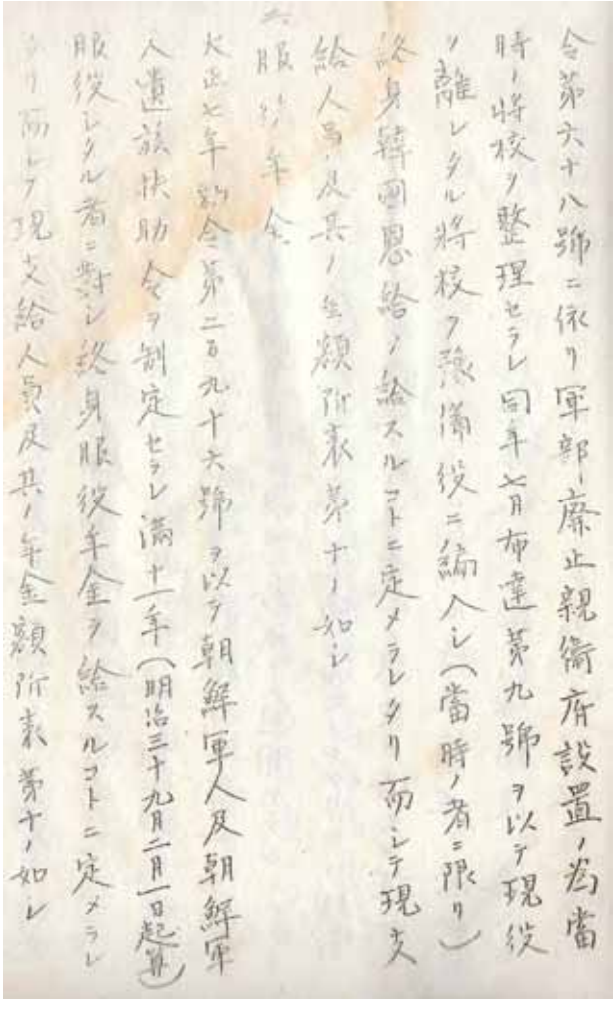

令第六十八號ニ依リ軍部ノ廢止親衛府設置ノ爲當
時ノ將校ノ整理セラレ同年七月布達第九號ヲ以テ現役
ノ儘離レタル將校ノ隊附從ニノ編入レ（當時ノ者ニ限リ）
終身賜國恩給ノ給スルコトニ定メラレタリ而レテ現支
給人員及其ノ金額別表第十ノ如レ

二、服役年金

大正七年勅令第二百九十六號ヲ以テ朝鮮軍人及朝鮮軍
人遺族扶助令ヲ制定セラレ滿十一年（明治三十九年二月一日起算）
服役シタル者ニ對シ終身服役年金ヲ給スルコトニ定メラレ
タリ而レテ現支給人員及其ノ年金額別表第十ノ如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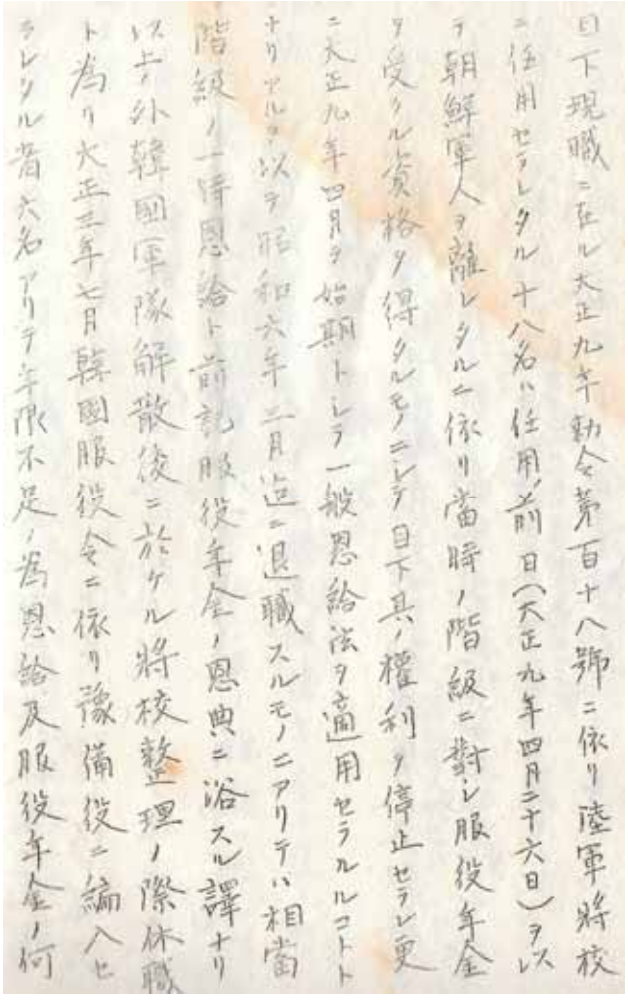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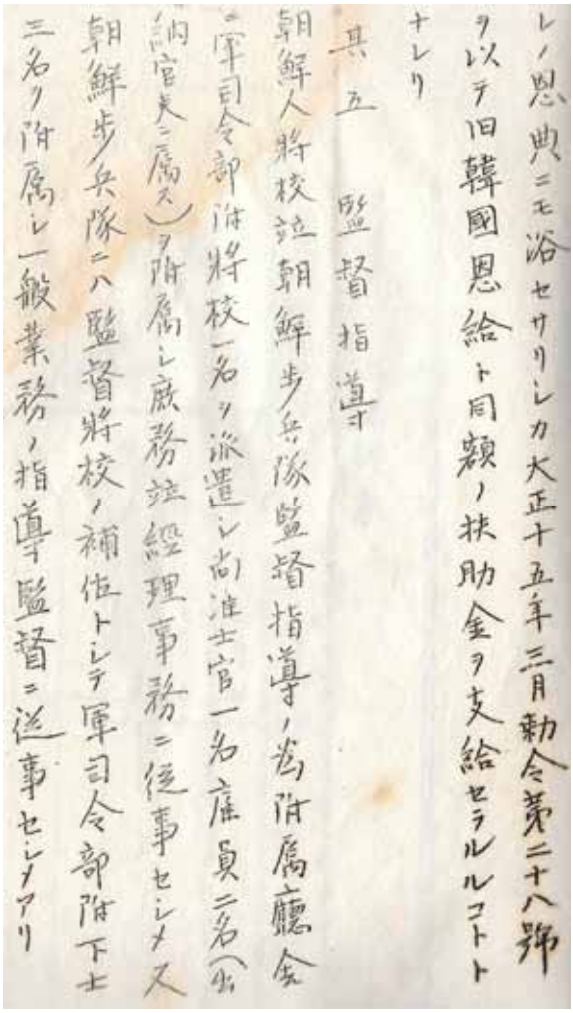

レノ恩典ニモ浴セサリシカ大正十五年三月勅令第二十八號ヲ以テ旧韓國恩給ト同額ノ扶助金ヲ支給セラルルコトトナレリ

其五　監督指導

朝鮮人將校並朝鮮歩兵隊監督指導ノ爲附屬廳舍ニ軍司令部附將校一名ヲ派遣シ尚准士官一名雇員二名（内一名ハ納官吏ニ屬ス）ヲ附屬シ庶務並經理事務ニ従事セシメ又朝鮮歩兵隊ニハ監督將校ノ補佐トシテ軍司令部附下士三名ヲ附屬シ一般業務ノ指導監督ニ従事セシメアリ

別表第二

朝鮮人將校出身別表

昭和四年六月一日調

區分	現役				豫後備役				備考
	將官	佐官	尉官	計	將官	佐官	尉官	計	
日本士官學校出身	二	三	五	一〇	一	四	五	一〇	一、本表中其他ノ部ニ於ケル者ハ衛生部員及獸醫部將校ニシテ日本留學生及朝鮮醫學校卒業者ナリ
武官學校出身		七	四	一一		六	一九	二五	二、本表中相當官ヲ含ム
武科出身						一	一	一	
下士出身							一	一	
其他	一	一	十	一二		二	一	三	
計	二	一一	一〇	三四	一	一三	二〇	三四	

附表第三

朝鮮出身將校人員表

昭和四年六月一日調

官等	現役	豫備役	後備役	計
中將	一			一
少將	一		一	二
大佐	一		二	三
中佐	六	二		八
少佐	四	六	三	一三
大尉	五	六	四	一四
中尉		二	五	七
少尉			四	四
計	一八	一六	一九	五三

備考 一、本表中ニ相當官ヲ含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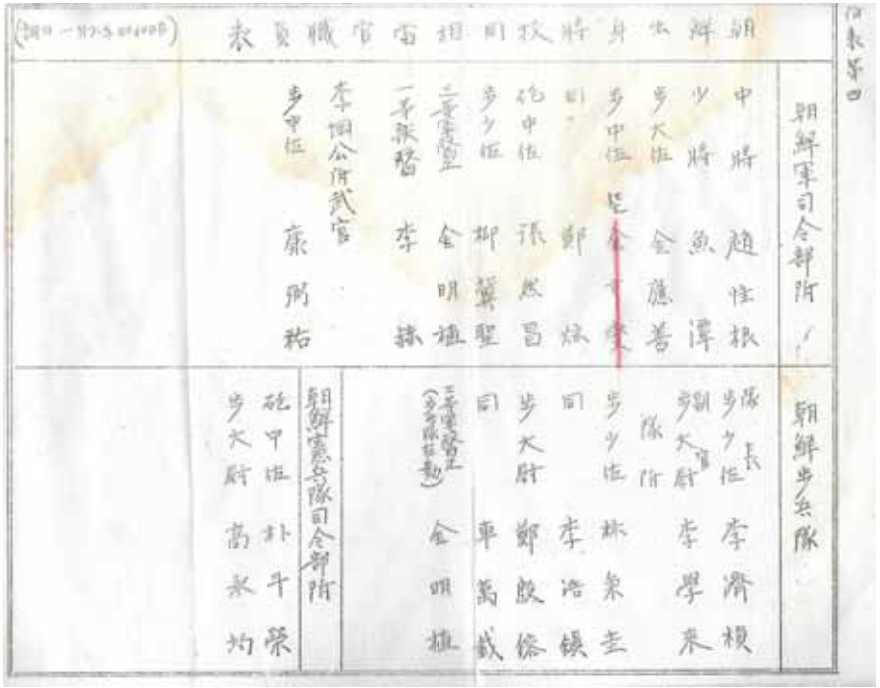

朝鮮軍人官等相當表

朝鮮軍人	陸軍軍人
陸軍歩兵特務正校	陸軍歩兵特務曹長
同　正校	同　曹長
同　副校	同　軍曹
同　參校	同　伍長
同　上等兵	同　上等兵
同　一等卒	同　一等卒
同　二等卒	同　二等卒
陸軍計手	陸軍一、二、三等計手
陸軍調護長	陸軍一、二、三等看護長
陸軍調護手	陸軍上等看護卒

備考

下欄ニ掲ケル者ハ上欄ノ陸軍軍人ニ相當スルモノトス

附表第六

朝鮮歩兵隊下士卒年齢別人員表

昭和四年六月一日調

階級＼年齢	下士	兵卒	計
十八歳		九	九
十九歳		二八	二八
二十歳	一	五八	五九
二十一歳		三九	三九
二十二歳	三	二〇	二三
二十三歳	四	一三	一七
二十四歳	一	四	五
二十五歳		一	一
二十六歳	二		二
二十七歳	二		二
二十八歳	二		二
二十九歳	一		一
三十歳	一		一
三十一歳			
三十二歳			
三十三歳			
三十四歳	一		一
計	二〇	一七二	一九二

備考

一、本表中ニ相當官ヲ含有セリ

附表第七

昭和四年六月一日調

朝鮮歩兵隊下士卒ノ平入隊前職業別人員表

区分 / 階級	下士	卒	計
農業	五	八二	八八
商業	三	一三	一六
学生	九	四六	五五
教員		八	八
面書記		二	二
雇人	三	一四	一七
公吏	一	一	二
鉄工		二	二
代書業		一	一
無職			
計	二一	一七一	一九二

備考

一、本表中ニ相當官ヲ含有シア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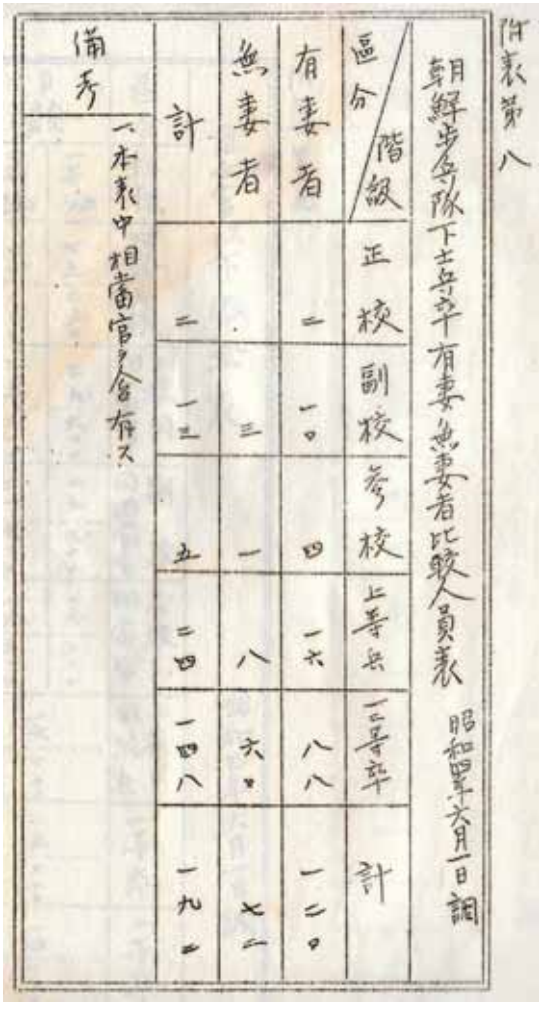

附表第八

朝鮮歩兵隊下士卒中有妻無妻者比較人員表　昭和四年六月一日調

区分／階級	正校	副校	参校	上等兵	一二等卒	計
有妻者	二	一〇	四	一六	八八	一二〇
無妻者		三	一	八	六〇	七二
計	二	一三	五	二四	一四八	一九二

備考　一本表中相當官ノ含有ス

准士官以下俸給表

昭和四年六月一日調

区分	日額	
種類	一等俸	二等俸
特務正校	七五二五	七〇〇〇
正校同相當官	三九六〇	三七五〇
副校同相當官	二五九〇	二一六〇
參校同相當官	一九五〇	一八五〇
上等兵同級兵		一六〇〇
一等卒		一五〇〇
二等卒		一四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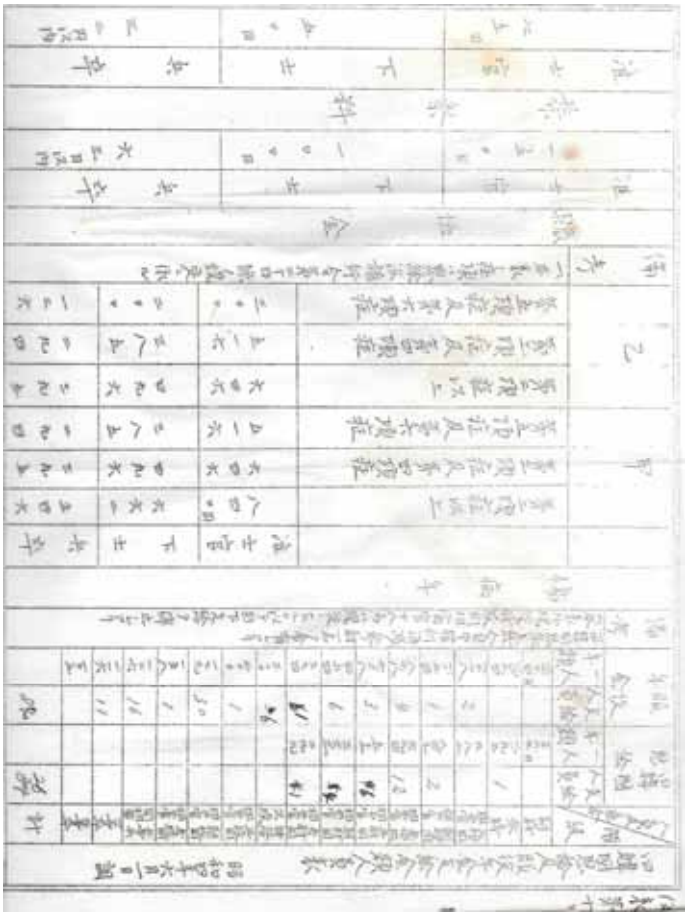

육군박물관 학예총서 제2집

[개정판] 조선군인 및 조선보병대에 관해서

초판인쇄 2018년 12월 21일
초판발행 2018년 12월 26일

발 행 인 박일송 · 조성식
기 획 이상훈 · 김재범
번 역 방준영
교 정 이동국 · 김재범
행정지원 최미경 · 박은자
발 행 처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01805)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1호
Tel. 02. 2197 - 6601~6608

편집제작 박문사
Tel. 02. 992 - 3253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제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